

발 간 등 록 번 호

연구보고서 2013-12-0001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1.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김기현(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경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팀장)

이지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상담원)

장희선(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문선영(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손나윤(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수칙

I.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II.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III.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목차

아동학대 사례 분석연구 I.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9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코딩시스템 구축10
3.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변수12
4. 코딩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13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신고, 조사 및 학대판정17
 - 1) 판정유형별 사례 수17
 - 2) 판정유형별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 아동 수18
 - 3) 지역별 분포19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20
 - 1) 아동 성별20
 - 2) 아동 연령21
3.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22
 - 1) 학대행위자 성별22
 - 2) 학대행위자 연령22
 - 3)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 간의 관계23
4. 어린이집 유형24
5.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25
 - 1)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25
 - 2)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26
 - 3) 아동학대 학대유형별 특성27
 - 4) 아동학대 발생 빈도36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종조치 결과39
 - 1)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40
 - 2)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43
 - 3)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44

목차

7. 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비교	45
1) 잠재위험사례의 학대유형별 예시	46
2)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집단 비교	54
3) 일반사례 학대유형별 예시	60
4)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집단 비교	69
5)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집단 비교	74
8. 최종조치 결과에 따른 비교	79
1) 판정유형 및 대상별 최종조치	79
2) 최종조치 수준에 따른 대상별 비교	85
9.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99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과요약	103
1)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103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특성	104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104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특성	104
5)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104
6) 어린이집 아동학대 최종조치의 특성	105
7)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별, 조치별 비교	106
2. 시사점	107
1)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의 증가	107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율 대비 판정을 감소	108
3)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높은 신체학대 비율	108
4)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학대행위 차이	109
5)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치대상에 따른 최종조치 차이	110
3. 제언	110
참고문헌	113

표 목차

〈표 II-1〉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판정사례 유형별 어린이집 수	9
〈표 II-2〉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변수	12
〈표 III-1〉 판정유형별 사례 수	18
〈표 III-2〉 판정유형별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18
〈표 III-3〉 지역별 분포	19
〈표 III-4〉 아동 성별	20
〈표 III-5〉 아동 연령	21
〈표 III-6〉 학대행위자 성별	22
〈표 III-7〉 학대행위자 연령	23
〈표 III-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	23
〈표 III-9〉 어린이집 유형	24
〈표 III-10〉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25
〈표 III-11〉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26
〈표 III-12〉 중복학대 유형별 분포	27
〈표 III-13〉 신체학대 유형 (중복포함)	28
〈표 III-14〉 신체학대 도구 사용여부	30
〈표 III-15〉 신체학대 사용도구 종류	30
〈표 III-16〉 신체학대 손상유형	31
〈표 III-17〉 성학대 유형 (중복포함)	31
〈표 III-18〉 정서학대 유형 (중복포함)	33
〈표 III-19〉 방임 유형 (중복포함)	34
〈표 III-20〉 신체학대 발생 빈도	36
〈표 III-21〉 정서학대 발생 빈도	37
〈표 III-22〉 성학대 발생 빈도	38
〈표 III-23〉 방임 발생 빈도	39
〈표 III-24〉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유무	39
〈표 III-25〉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40
〈표 III-26〉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41
〈표 III-27〉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41
〈표 III-28〉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42

표 목차

〈표 III-29〉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유무	43
〈표 III-30〉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43
〈표 III-31〉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	44
〈표 III-3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45
〈표 III-33〉 잠재위험사례 중 신체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46
〈표 III-34〉 잠재위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48
〈표 III-35〉 잠재위험사례 중 정서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49
〈표 III-36〉 잠재위험사례 중 방임 의심사례 (중복포함)	52
〈표 III-37〉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55
〈표 III-38〉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58
〈표 III-39〉 일반사례 중 신체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61
〈표 III-40〉 일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63
〈표 III-41〉 일반사례 중 정서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64
〈표 III-42〉 일반사례 중 방임 의심사례 (중복포함)	66
〈표 III-43〉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70
〈표 III-44〉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72
〈표 III-45〉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75
〈표 III-46〉 학대유형별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77
〈표 III-47〉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유무	80
〈표 III-48〉 대상별 최종조치 유무	81
〈표 III-49〉 대상유형별 최종조치	82
〈표 III-50〉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 포함)	83
〈표 III-51〉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포함)	83
〈표 III-5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중복포함)	84
〈표 III-53〉 전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85
〈표 III-54〉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87
〈표 III-55〉 전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90
〈표 III-56〉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92
〈표 III-57〉 전반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94
〈표 III-58〉 학대유형에 따른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97

그림 목차

〈그림 II-1〉 연구대상 사례 선정 과정	10
〈그림 II-2〉 코딩시스템 구축 과정	11
〈그림 III-1〉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99

I 서론



최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한국사회는 육아지원정책의 급격한 팽창을 경험 중이다. 이는 동시에 보육 서비스의 품질제고라는 중요한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성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 영유아 보육시스템의 근간인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확보되지 않고 보육 서비스 질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하여 극히 일부 사례만이 담당기관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보다 설사 신고율이 다소 높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학대 행위이며 어떤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셋째, 어린이집은 대부분 매우 어린 나이의 영유아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해도 이를 부모에게 적절히 알리거나 조사 시에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어렵다. CCTV의 설치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많은 수의 부모들이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 대한 장시간의 지속적 참여와 관여가 제한적인 것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데에 일조한다.

생애초기인 영아기 및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학대의 경험은 아동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장화정·윤은영·박은혜, 2013).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놀라울 만큼 적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명확히 세워져있지 않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전사회적 관

심은 최근의 것으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학대 발생 장소에 관한 분석표 중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학대 통계치 외에 관련 통계를 찾기 어렵다. 연구들도 대부분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인식조사나 신고에 대한 태도(차영숙·문혜련, 2009)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거나 심화된 지식을 제공하기 어렵다.

외국의 문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여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고(Schumacher & Carlson, 1999),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존재했던 몇몇 연구들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성학대(Finkelhor, Williams, & Burns, 1988)에 배타적 관심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위탁가정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가정 외에 배치된 아동들에 관심이 주어져 한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되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이유들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자료가 실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는 학대날짜, 아동 및 가해자 특성, 그리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 및 정황, 학대로 인한 결과, 학대판정 여부 및 이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여부 및 내용 등 학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최근 2010년-2012년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학대 조사 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학대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과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 조사를 실시한 사례 중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총 7,406건, 2011년 8,325건, 2012년 8,979건의 아동학대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각각 100건, 159건, 135건이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이 중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사례만

을 선택하여 해당사건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장소의 구분으로서 어린이집 학대를 정의하게 되면 아동학대 내에는 등하교를 도와주기 위해 온 부모에 의한 학대나 기타 방문객에 의한 학대도 모두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 및 학대행위자 특성, 구체적인 학대 행위 및 정황, 학대로 인한 결과, 학대판정 여부 및 이유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대판정이 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으며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는 판정유형과 고소고발, 어린이집 퇴원 등의 최종조치 여부 및 유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2010년-2012년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한다.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3. 학대 판정 유형과 최종조치 유형에 따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코딩시스템 구축
3.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변수
4. 코딩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1. 연구대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462개의 어린이집(해당 아동 수 988명)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91개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였고 215명의 아동이 어린이집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학대사례로 판정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91개 전수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비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대판정에 따른 사례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학대사례 91개(피해아동 215명)와 함께 잠재위험사례 59개(피해아동 185명), 일반사례 312개(피해아동 588명) 전수를 포함하여 총 462개 어린이집에서의 988명 아동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 II-1〉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판정사례 유형별 어린이집 수

(단위: 개, %)

판정사례 유형	어린이집 개수 (아동 수)	백분율
학대사례	91 (215명)	19.7
잠재위험 사례	59 (185명)	12.7
일반사례	312 (588명)	67.6
계	462 (988명)	100.0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대발생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국한시켰으며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학대로 제한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엔 100건, 2011년엔 159건, 2012년엔 135건이었다. 이들 중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학대로

제한할 경우 2010년엔 13개 어린이집에서 30명의 아동이, 2011년엔 29개 어린이집에서 88명 아동이, 2012년엔 49개 어린이집에서 97명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대상 사례 선정 과정은 아래 <그림 II-1>에 요약하였다.



<그림 II-1> 연구대상 사례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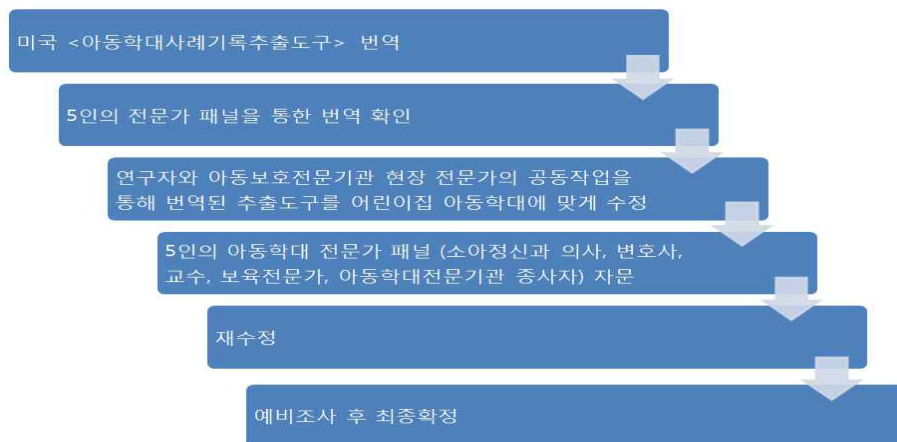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코딩시스템 구축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체 코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코딩시스템은 미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스템 내 학대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학대 사례기록 추출 도구> (Maltreatment Case Record Abstraction Instrument [MCRAI], Trickett, Mennen, Kim, & Sang, 2009; Mennen, Trickett, Kim, & Sang, 2010)를 바탕으로 번역하였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한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을 거쳐 구축하였다.

MCRAI는 Barnett, Manly, & Cichetti (1993)가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은 대규모 아동학대 중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학대분류시스템-수정본 (Modified Maltreatment Classification System, [MMCS])을 기본으로 많은 아동학대연구자들과 미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기록을 세부사항까지 추출하여 아동들의 학대경험을 자세히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이다. MCRAI의 기본적 구조는 학대를 범주와 하위범주, 그 하위범주로 계속 나누어 나아가도록 되어있고 이외에도 학대행위자, 빈도, 지속기간, 행위의 결과 등 학대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MCRAI를 바탕으로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맞는 코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 패널과 아동학대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소아정신과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학 교수, 보육전문가, 아동학대 전문기관 중간 관리자)을 구성하였다. MCRAI를 미국 아동학대 연구에서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가 MCRAI를 번역한 후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통해 번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책임 연구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전문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번역된 도구를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과정에서 어린이집 맥락에 맞지 않는 항목들(교육방임)은 제거되었고 필요한 항목들(최종조치 중 고소고발 여부, 학대행위자 유형 중 보육교직원 등)은 추가되었다. 수정을 바탕으로 5인의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코딩시스템을 검토하였고 자문을 받아 재수정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중 무작위로 추출된 20여 사례에 대해 코딩시스템을 적용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코딩시스템을 확정지었다. 코딩시스템 구축 과정은 다음의 그림 <II-2>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II-2> 코딩시스템 구축 과정

3.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변수

코딩시스템을 통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사례들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표 II-2>에 제시하였다.

<표 II-2> 코딩시스템에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변수

	구 분	내 용
학대판정	학대여부	학대, 잠재위험, 일반
아동특성	성별	남/여
	나이	나이
	피해아동 수	판정유형별 아동 수
학대행위자 특성	성별	남/여
	나이	나이
	가해자 수	학대행위자 수
	아동과의 관계	대표자, 원장, 이사, 보육교사, 운전기사, 기타
어린이집 특성	어린이집 종류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학대 특성	신고자 유형	부모,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육 교직원 (전직, 현직),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다른 원생/보호자, 친인척,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낯선사람
	학대유형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복학대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도구사용여부, 사용도구 종류, 신체손상유형
	성학대	구체적 행위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방임	구체적 행위
	학대발생 빈도	1회, 2회 이상
	최종조치	최종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 타어린이 집 전원, 어린이집 퇴원, 격리보호, 가정 지원 및 모니터링 권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 고소고발, 자격정지, 자격취소, 벌금, 과태료, 해임, 징계, 교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 고소고발, 폐쇄,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벌금, 과태료, 경고, 모니터링

4. 코딩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아동학대사례 기록을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와 신고내용, 현장조사내용, 상담원 소견, 최종조치에 관한 평균 2-3페이지 분량의 사례개요서를 작성하였고 이 개요서를 바탕으로 집중적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 3명이 개발된 코딩시스템을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찾아 비교·대조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결측치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신고, 조사 및 학대판정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3.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
4. 어린이집 유형
5.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
6.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결과
7. 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비교
8. 최종조치 결과에 따른 비교
9.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단위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세부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를 학대판정사례와 비교·대조하였고, 주요 항목들에 대해 교차분석 및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신고, 조사 및 학대판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된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된 어린이집은 총 462곳이었다.

1) 판정유형별 사례 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되었던 2010년도의 44개 어린이집 중 13개의 어린이집을 학대사례로 판정하였으며 4개 어린이집은 잠재위험사례로, 27개 어린이집은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엔 각각 119개와 299개의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접수가 이루어졌고, 이들 중 2011년엔 29개의 어린이집에서, 2012년엔 49개의 어린이집에서 실제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였다.

판정유형별 분포비율은 일반사례,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각각의 판정사례는 2010년 이후부터 2011년, 2012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학대 판정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29.4%, 24.4%, 16.4%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판정유형별 사례 수

(단위: 개)

판정사례 유형	2010	2011	2012	합 계
학대사례	13	29	49	91
잠재위험사례	4	16	39	59
일반사례	27	74	211	312
합 계	44	119	299	462
학대판정율	29.5%	24.4%	16.4%	19.7%

2) 판정유형별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어린이집 수와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집 수 대비 학대판정 아동 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학대사례로 판정된 91개의 어린이집에선 215명의 아동들이 학대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아동 수가 2.36명인 것으로, 학대가 발생한 1개 어린이집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일반사례의 경우 312개 어린이집에서 총 588명의 아동을 일반사례로 판정하여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 아동 수가 3.1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잠재위험사례는 59개의 어린이집에서 총 185명의 아동을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여,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보다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 아동 수가 다소 적은 1.88명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2〉 판정유형별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단위: 개, 명)

판정사례유형	빈 도		어린이집 수 대비 판정 아동 수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례	91	215	2.36
잠재위험사례	59	185	3.14
일반사례	312	588	1.88
합 계	462	988	2.13

3) 지역별 분포

학대로 판정받은 전체 91개의 어린이집 중 31개(34.1%)의 어린이집이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 충청남도, 인천 순으로 학대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하였다. 2012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2)에 따르면, 경기도에 12,869개, 서울에 6,538개의 어린이집이 분포하여 전국 42,527개 어린이집의 각각 30.3%, 15.4%에 해당한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에서의 학대판정 어린이집 분포비율인 34.1%, 19.8%와 비슷한 수치로써, 어린이집 분포비율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비율 간의 상호 관련성을 시사한다.

〈표 III-3〉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지 역	빈 도	백분율
서 울	18	19.8
부 산	2	2.2
대 구	1	1.1
인 천	5	5.5
광 주	3	3.3
대 전	2	2.2
울 산	3	3.3
경 기 도	31	34.1
강 원 도	3	3.3
충 북	4	4.4
충 남	7	7.7
전 북	3	3.3
전 남	2	2.2
경 북	1	1.1
경 남	3	3.3
제 주	3	3.3
합 계	91	100.0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91개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총 215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아동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91개 어린이집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전체 215명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단위별 분석을 위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¹⁾을 1명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아동 성별

학대를 경험했던 215명의 아동들 중 남아가 119명(55.3%), 여아가 96명(44.7%)으로 보고되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학대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분석 단위로 하여, 91개 각 어린이집에서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이들 91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아는 55명(60.4%), 여아는 36명(39.6%)으로 나타났다.

학대수준이 높은 91명의 아동들 중에서 남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학대판정을 받은 전체 215명의 아동들 중에서의 남아 비율보다도 약 5%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들이 경험했던 학대수준 역시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아동 성별

(단위: 명, %)

성 별	학대판정 전체 아동		어린이집 단위별 아동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남 아	119	55.3	55	60.4
여 아	96	44.7	36	39.6
합 계	215	100.0	91	100.0

1) 각 어린이집에서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은 폭력수준이 가장 심각하거나 학대의 빈도가 높거나 학대유형의 중복 수준이 높은 아동들로 선별하였고, 학대수준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랜덤하게 1명의 아동을 선별하였다.

2) 아동 연령

어린이집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215명의 아동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학대판정 아동의 평균 연령은 3.40세로 나타났으며, 해당 아동들의 연령은 1세부터 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이들 아동의 연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세 아동이 54명(25.1%)으로 어린이집 학대경험 아동들의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2세 아동이 42명(19.5%)이었고, 1세 아동도 34명(15.8%)으로 나타났다. 3세 아동과 5세 아동은 각각 29명(13.5%), 31명(14.4%)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학대에 노출되었던 아동의 70% 이상이 4세 이하의 아동으로 나타나, 1세부터 4세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학대에 더욱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별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 1명을 선별하여 연령을 분석한 결과, 2세(22.0%)인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세(20.9%), 3세(16.5%)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판정을 받은 전체 215명 아동의 평균 나이는 3.40세인 반면,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 91명의 평균 나이는 3.22세로 나타나, 학대수준이 높은 91명 아동의 평균 연령이 전체 215명 아동의 평균 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나이 어린 아동들의 학대노출 가능성과 학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5> 아동 연령

(단위: 명, %)

연 령(세)	학대판정 전체 아동		어린이집 단위별 아동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1	34	15.8	19	20.9
2	42	19.5	20	22.0
3	29	13.5	15	16.5
4	54	25.1	13	14.3
5	31	14.4	10	11.0
6	21	9.8	11	12.1
7	4	1.9	3	3.3
합 계	215	100.0	91	100.0
평균 (표준편차)	3.40(1.640)세		3.22(1.800)세	

3.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학대로 판정된 91개 어린이집에서의 학대행위자는 총 95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1개 어린이집에서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수치로써, 아동학대가 판정된 91개 어린이집 중 4개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대행위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이들 95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학대행위자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행위자 95명은 여성이 83명(87.4%), 남성이 12명(12.6%)으로 집계되어,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성 별	빈 도	백분율
남 자	12	12.6
여 자	83	87.4
합 계	95	100.0

2) 학대행위자 연령

95명의 학대행위자 중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93명의 연령 분포는 〈표 III-7〉에 제시하였다.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39.57세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36세-40세 또는 41세-45세에 포함되는 비율이 각각 18.9%(18명), 20%(19명)로 전체 행위자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21세-25세가 8명(8.4%), 26세-30세가 13명(13.7%), 31세-35세가 12명(12.6%), 45세-50세가 11명(11.6%), 50세 이상이 12명(12.6%)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부터 40~50대 연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표 III-7〉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 령(세)	빈 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21 - 25	8	8.4	39.57(10.338)
26 - 30	13	13.7	
31 - 35	12	12.6	
36 - 40	18	18.9	
41 - 45	19	20.0	
45 - 50	11	11.6	
50 이상	12	12.6	
파악 안 됨	2	2.1	
합 계	95	100.0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

학대로 판정받은 91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학대를 행했던 행위자의 대부분은 보육교직원이거나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5명의 학대행위자 중 과반수 이상인 52명이 보육교직원(54.7%)이었고 32명(33.6%)이 원장으로,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에 의해 발생한 학대는 전체 학대행위자의 88.3%에 해당하였다. 그 이외에도 실습생, 간호사, 원장의 친인척,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였으며, 대표자, 이사, 운전기사 등에 의해서도 학대가 발생하였다.

〈표 III-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

(단위: 명, %)

학대행위자	빈 도	백분율
대표자	1	1.1
원장	32	33.6
이사	1	1.1
보육교직원(보조교사 포함)	52	54.7
운전기사	2	2.1
기타	6	6.3
파악 안 됨	1	1.1
합 계	95	100.0

4. 어린이집 유형

아동학대가 발생한 91개 어린이집의 기관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1개 어린이집의 기관유형은 국공립유형이 5개(5.5%), 민간유형이 53개(58.2%), 가정유형이 31개(34.1%),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기타유형이 2개(2.2%)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민간유형 또는 가정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판정받은 사례가 학대를 판정받은 어린이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2,527개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이 14,440개로 전체 34%를 차지하고(보건복지부, 2012), 국공립어린이집은 2,203개로 전체의 5%, 가정어린이집은 전체의 5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기관유형 중 가정어린이집이 국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학대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기관유형의 절반 이상이 민간유형에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불균형적으로 민간유형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9〉 어린이집 유형

(빈도: 개, %)

어린이집 유형	빈도	백분율
국공립	5	5.5
민간	53	58.2
가정	31	34.1
기타	2	2.2
합계	91	100.0

5.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

1)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의심하고 신고한 신고자는 91명 중 58명(63.7%)이 부모로서, 전체 신고자 유형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직 보육교직원¹에 의한 신고는 각각 5명(5.5%), 4명(4.4%), 4명(4.4%)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신고자 유형	빈도	백분율
부모 ²	58	63.7
아동복지전담공무원 ¹	5	5.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¹	4	4.4
현직 보육교직원 ¹	4	4.4
전직 보육교직원 ²	4	4.4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²	2	2.2
피해아동 외 다른 원생/보호자 ²	2	2.2
친인척 ²	2	2.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¹	1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¹	1	1.1
유치원종사자 ¹	1	1.1
낯선 사람 ²	1	1.1
익명 ²	3	3.3
기타 ²	3	3.3
합계	91	100.0

※ ¹: 신고의무자, ²: 비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인 전직 보육교직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총 91개의 아동학대 판정사례 중 각각 4명(4.4%), 2명(2.2%)이 신고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피해아동 외 다른 원생이나 그 보호자, 친인척이 각각 2명(2.2%)씩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하였다. 익명으로 신고한 신고자는 3명,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TV 프로그램 PD 등의 신고자도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전체 학대사례의 17.6%,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2.4%로 나타났다.

2)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91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단위로 분석했으며 하나의 어린이집에서 복수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경우 가장 심각한 사례 한 개를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①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학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학대로 판정된 91개의 어린이집 중 신체학대로 판정받은 어린이집은 50곳(54.9%), 중복학대로 판정받은 어린이집은 19곳(20.9%)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13곳(14.3%)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학대는 신체학대 다음으로 높게 보고된 단일학대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학대가 발생했던 어린이집 중 성학대가 발생한 곳은 6곳(6.6%), 방임이 발생한 곳은 3곳(3.3%)이었다.

〈표 III-11〉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단위: 개, %)

아동학대 유형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50	54.9
정서학대	13	14.3
성학대	6	6.6
방임	3	3.3
중복학대	19	20.9
합 계	91	100.0

② 중복학대 유형별 분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유형 중 중복학대가 발생한 19곳(20.9%)의 학대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I-12>에 제시하였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는 가장 빈도가 높은 중복학대유형으로 전체 중복학대 발생의 52.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신체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어린이집이 4곳(21.1%), 정서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한 어린이집이 2곳(10.5%)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이 세 가지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어린이집도 3곳(1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학대 유형으로써의 신체학대와 중복학대 유형으로써의 신체학대가 관여된 어린이집 사례를 함께 고려해볼 때 아동학대가 발생한 91개 어린이집 중 67개(73.6%) 어린이집에서 신체학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중복학대 유형별 분포

(단위: 개, %)

중복학대 유형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 정서학대	10	52.6
신체학대 + 방임	4	21.1
정서학대 + 방임	2	10.5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3	15.8
합계	19	100.0

3) 아동학대 학대유형별 특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학대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떠한 학대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학대행위를 이미 정해진 몇몇의 행위유형에 따라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한 개 어린이집에서 이 유형화된 학대행위가 중복으로 발생했을 때는 중복으로 체크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떠한 학대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특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학대로 판정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신체학대 행위는 아동을 흔들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손이나 손바닥으로 아동의 신체를 꼬집거나 때리는 행위, 아동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아동을 때리는 행위,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 외의 기타 행위 등 총 6가지의 유형이었다.

만3세 아동이 친구와 싸웠다 하여 행위자가 아동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끌고 가서 아동을 흔들고 뒤로 확 젖혀 아동이 책상에 머리를 부딪칠 위험에 처하게 했던 사례와 같이 아동을 흔들거나 잡아당기고 밀치는 행위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91개의 어린이집 중 10개(12.5%)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 아동이 말을 듣지 않거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아동의 머리를 치거나 깨물고 꼬집고 하는 행위는 91개의 어린이집 중 48개(60%)의 어린이집에서 발견되어, 해당 행위가 신체학대의 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행위자가 아동의 옆구리와 허리를 걷어차는 비교적 강한 신체적 행위도 2곳(2.5%)의 어린이집에서 확인되었으며, 행위자가 아동에게 소고를 던져 아동이 뇌진탕에 걸리게 된 사례도 1개(1.3%) 어린이집에서 확인되었다. 파리채나 가위, 연필 등의 도구를 사용해 행위자가 아동들을 때리는 사례도 18개(22.4%)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아동의 신체를 위협한 사례 역시 1개(1.3%)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신체학대 유형 (중복포함)

(단위: 개, %)

신체학대 유형 ²⁾	어린이집 신체학대 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	만3세 아동이 친구와 싸운다하여 뺨을 때리고 억지로 한팔 끌고 가서 4-5차례 양쪽 어깨 흔들며 뒤로 확 젖힘	10	12.5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물기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화장실에서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벽에 부딪히게 함 만2세 아동이 다른 아동 깨물어 피 났다는 이유로 아동의 엉덩이를 2차례 때리고 손을 2차례 깨물며 볼을 꼬집음	48	60.0
발로 차기/때리기	복도에서 심하게 장난쳤다는 이유로 아동의 옆구리와 허리를 걷어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림	2	2.5

신체학대 유형 ²⁾	어린이집 신체학대 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도구로 때리기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손에 물건 권 채 놓으려고 하지 않아 파리채로 아동의 뺨을 두 대 때림		
	만 6세 아동이 '가나다라'를 모른다는 이유로 가위와 연필로 배를 10번 정도 찌름	18	22.4
물건 던지기	아동에게 던진 소고가 후두부에 맞아 뇌진탕 진단 받음	1	1.3
기 타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및 축대를 들이받아 해를 입힘	1	1.3
	합 계	80 ³⁾	100.0

① 신체학대 도구 사용여부

〈표 III-14〉에 따르면 학대판정을 받은 전체 91개의 어린이집 중 신체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단일유형과 중복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가 연루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67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중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동에게 신체적 행위를 가한 어린이집은 48곳(71.6%)인데 반해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한 어린이집은 19곳(2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체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약 1/4 이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행위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학대 행위를 행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신체학대의 행위는 보통 물건(재떨이, 책, 그릇) 등을 던지는 행위,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패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거나 발로 차는 행위, 꼬집거나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빗자루/옷걸이/풍동이/허리띠 등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행위, 담뱃불/다리미로 지지거나 꼬챙이/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행위, 뜨거운 불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으로 나뉠 수 있다(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학대의 세부행위 및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하였던 신체학대 행위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신체학대 세부행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 신체학대 내 학대행위의 중복을 포함하기에 신체학대 유형의 합계(80)가 신체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총 개수(67개)를 초과한다.

〈표 III-14〉 신체학대 도구 사용여부

(단위: 개, %)

신체학대 도구 사용여부	빈 도	백분율
도구사용 없음	48	71.6
도구사용 함	19	28.4
합 계	67	100.0

② 신체학대 사용도구 종류

신체학대 행위에 사용된 도구로는 압핀이나 클립부터 솜 없는 면봉, 가위, 파리채, 동화책, 소고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이들 중 긴 자는 2곳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신체학대 도구로 사용되었다. 도구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로 그 구체적인 구성은 〈표 III-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5〉 신체학대 사용도구 종류

(단위: 개, %)

신체학대 사용도구 종류	빈 도	백분율
긴 자	2	10.5
각종 막대기 (파리채,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 글루건 심, 뽕망치, 포장지 심 등)	10	52.5
회초리	1	5.3
소고	1	5.3
솜없는 면봉	1	5.3
연필, 가위, 압핀	2	10.5
휴대폰, 동화책	1	5.3
기타교구	1	5.3
합 계	19	100.0

③ 신체학대 손상유형

신체학대 행위가 발생했던 어린이집들 중 해당 아동에게 신체학대로 인해 가해진 손상은 상처 또는 멍이 드는 것에서부터 병원 입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하였다(표 III-16). 신체학대로 판정된 어린이집들 중 42곳(62.7%)에서 신체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들에게 상처나 멍의 흔적이 남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아동이 뼈 상해를 얻거나 손상으로 인

해 입원이 필요했던 사례는 3곳(4.5%)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신체학대로 인해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던 형태의 손상은 상처나 멍이 드는 형태의 손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신체학대 손상유형

(단위: 개, %)

신체학대 손상유형	빈 도	백분율
손상 없음	22	32.8
상처나 멍이 들	42	62.7
뼈 상해 및 입원	3	4.5
합 계	67	100.0

(2) 성학대 특성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학대유형 중 성학대는 91개 어린이집에서 총 9건이 보고되었다. 행위자가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진 사례가 5건(55.6%)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성학대 유형 (중복포함)

(단위: 건, %)

성학대 유형 ⁴⁾	어린이집 성학대 사례 예시	빈 도	백분율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짐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불을 끄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고 함	5	55.6
아동의 입을 행위자의 생식기에 접촉시킴	이사장이 성기를 아동의 입에 넣는 행동을 했다고 아동이 보고했다 함	1	11.1
손이나 도구를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넣음	아동에 의하면, 봉고선생님이 개구리가 들어갔으니 빼내야 한다고 하며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으로 질 속을 찔렀다고 함	1	11.1
기 타	성기에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으나, 아동의 해당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함	2	22.2
합 계		9	100.0

이들 사건 모두는 행위자가 아동의 몸, 특히 생식기를 만지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아동의 입을 행위자의 생식기에 접촉시킨 사례가 1건(11.1%), 손이나 도구를 행위자가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넣은 사례가 1건(11.1%), 아동의 성기에 긁힌 상처가 있으나 아동이 해당 학대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해 구체적인 학대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2건(22.2%)으로 나타났다.

(3) 정서학대 특성

정서학대는 APSAC(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and Children) 유형화에 따라 거부 또는 경멸의 행위,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착취 및 타락시키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Trickett, Mennen, Kim and Sang, 2009).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거부 또는 경멸의 행위와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정서학대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동이 행위자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던 정서학대 행위는 19건(33.3%)에 해당했으며, 행위자가 특정 대상의 아동들에게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행했던 정서학대 행위는 4건(7%)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교사 간 싸움이나 아동들에게 행사하는 폭력 등으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각각 18건(31.6%), 2건(3.5%), 2건(3.5%), 3건(5.3%)으로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25건 보고되었다. 행위자가 아동을 특정 공간에 가두는 행위는 7건(12.3%), 행위자가 10개월~12개월 유아에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등의 비현실적인 것을 강요했던 행위도 2건(3.5%) 보고되었다.

4) 성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 비디오표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김선경 외,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성학대 행위와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한 성학대 행위를 토대로 세부 행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18) 정서학대 유형 (중복포함)

(단위: 건, %)

APSAC ⁵⁾ 의 정서학대 유형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정서학대 사례 예시	빈도	%
거부 또는 경멸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함”	매운 음식 먹을 때 물 마시지 못하게 하며, 밥 먹는 속도 느리면 연령 낮은 반으로 보내 아동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	19	33.3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함”	야간에 잠을 자는 아동들에게 “니 애비 닳아 말을 안 듣니”, “애비없는 자식”, “아이, 새끼야” 라는 말을 함	4	7.0
공포감 조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18	31.6
	“아동을 내쫓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함”	학대 피해 아동의 동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행위자가 아동들을 집어서 밖에 버리겠다고 위협한다고 함	2	3.5
	“아동에게 교사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킴”	원장이 아동을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것을 담당교사가 제재하자 원장이 담당교사와 말다툼을 하고 이를 보고 아동이 울게 됨	2	3.5
	“아동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교사간 싸움 외)에 노출되었음”	학부모가 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언 등이 오가는 행동이 다른 원아들에게 목격됨	3	5.3
고립 시키기	“아동을 가두어놓음”	아동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불 꺼진 화장실이나 방에 가둠	7	12.3
착취 및 타락 시키기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함”	10개월~19개월 유아에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라고 강요함	2	3.5
합 계			57	100

5) APSAC(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and children)이 사용하는 정서학대 세부 범주에 따른 정서학대 유형분류이다.

(4) 방임 특성

방임은 Knutson et al.(2005)의 방임 유형을 토대로 학대행위를 유형화하였다 (Mennen, Trickett, Kim and Sang, 2010). 이 유형에 따르면, 방임은 돌봄방임, 의료 방임, 감독방임으로 유형화되며 돌봄방임은 다시 돌봄방임과 환경방임으로 유형화된다.

방임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썩은 음식, 불균형 적 음식을 행위자가 아동에게 제공했던 돌봄방임이 각각 3(9.6%)건, 2건(6.5%), 3건 (9.6%) 보고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I-19>. 아동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내에 위험한 물건을 비치한 사례,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 사례,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사례는 각각 2건(6.5%)씩 보고되어 총 8건의 환경방임이 보고되었다. 특히, 한 어린이집은 곰팡이가 핀 장난감을 아동들이 그대로 사 용하게 하였으며, 수족구에 걸린 아동을 등원시켜 다른 아동들에게 수족구를 전염시키도 록 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심각한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아토피와 습진의 피부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병이 더욱 심각해지는 의료방임 사례도 1건(3.2%) 보고되었다. 감독방임은 방임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유형으로, 보 육교직원의 감독 및 보호 부족으로 아동이 등·하원 차에 6시간 이상 갇히게 되었던 사례 도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19> 방임 유형 (중복포함)

(단위: 건, %)

Knutson의 방임유형	방임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사례 예시	빈도	%
돌봄방임	돌봄 방임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음”	아동들에게 밥을 잘 주지 않으며 단무지만 주기도 하며, 식단표를 잘 지키지 않음	3	9.6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음”	간식이 주로 바나나와 과자이며, 간식이 탄수화물 위주로 이로 인해 몇몇 아동의 아토피 증세가 심함	2	6.5
		“음식이 신선도나 청결 면에서 적절함”	상한 음식(썩은 고구마)을 아동에게 제공	3	9.6

Knutson의 방임유형	방임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사례 예시	빈도	%
	환경 방임	“어린이집 아동의 물리 적 환경은 안전하고 위 생적임”	낮잠 자는 시간 전까지 교 구장을 아동들이 수시로 왔 다갔다하는 입구에 세로로 세워놓아 아동들을 위험상 황에 방치시킴	2	6.5
		“현관, 복도, 계단, 화장 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 게 유지되고 있음”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며, 음 식물 쓰레기가 일정기간 방 치되어 있음	2	6.5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 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 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음”	어린이집 내 뽀족한 모서리 가 많아, 이로 인해 아동들 이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함	2	6.5
		“아동을 위험하고 비위 생적인 환경에 방치하 였음”	아동들에게 곰팡이 핀 장난 감이 제공되고 있으며, 원 내 수족구에 걸린 아동을 등원시켜 다른 아동들이 전 염됨	2	6.5
의료방임	의료 방임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 공하지 않았음”	24시간 어린이집에서 관리 소홀로 아동들 아토피와 습 진 등 피부병이 생겼으나 적 절한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 지 않아 병이 더 심각해짐	1	3.2
감독 방임	감독 방임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두 었음”	등원 시 교사가 아동의 하차 를 확인하지 못해 만4세 아 동이 25인승 어린이집 차량 에 약 6시간 동안 갇혔음	9	29
		“충분한 대체환경을 제 공하지 않은 채 아동을 혼자 두었음”	교사가 아동들 재운 뒤 30 분 이상 자리 비웠고 이때 만 2세 아동이 깨어나 교사 찾으며 2-30분 정도 교실 들다가 소변을 지림	5	16.1
합 계				31	100

4) 아동학대 발생 빈도

(1) 신체학대 발생 빈도

학대 발생 빈도는 학대행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학대 행위를 통한 학대 수준정도에 더해 학대 빈번성은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대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때문이다.

신체학대로 판정받은 어린이집은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가 포함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총 67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는데, 한 번의 특정한 신체학대 상황으로 인해 신체학대로 판정된 어린이집은 46개(68.7%) 어린이집으로, 신체학대 판정사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두 번 이상이면서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10개(14.9%) 어린이집에서, 두 번 이상 특정 횟수로 발생한 신체학대 사례는 2개(3%)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매일 신체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례도 2개(3%) 어린이집에서 보고되었으며, 정확하게 빈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7개(10.4%)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신체학대 발생 빈도

(단위: 개, %)

신체학대 발생 빈도	빈 도	백분율
한 번	46	68.7
두 번 이상 (횟수파악 가능)	2	3.0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 발생)	10	14.9
1개월에 한 번	-	-
1개월에 몇 번	-	-
1주일에 한 번	-	-
1주일에 몇 번	-	-
매 일	2	3.0
기 타	-	-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7	10.4
합 계	67	100.0

(2) 정서학대 발생 빈도

정서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중복학대 중 정서학대가 포함된 사례까지 포함하여 총 28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는데, 한 번의 특정한 정서학대 상황으로 인해 정서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개(32.1%)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여, 정서학대 판정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8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정서학대의 28.6%에 해당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III-21〉 정서학대 발생 빈도

(단위: 개, %)

정서학대 발생 빈도	빈도	백분율
한 번	9	32.1
두 번 이상 (횟수파악 가능)	1	3.6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 발생)	8	28.6
1개월에 한 번	-	-
1개월에 몇 번	-	-
1주일에 한 번	-	-
1주일에 몇 번	5	17.9
매 일	2	7.1
기 타	-	-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3	10.7
합 계	28	100.0

특정 횟수로 두 번 이상 발생한 정서학대 사례는 1개(3.6%)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몇 번은 정서학대를 당한다는 사례가 5개(17.9%) 어린이집에서, 매일 정서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례도 2개(7.1%) 어린이집에서 보고되었으며, 정확하게 빈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3개(10.7%)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

(3) 성학대 발생 빈도

성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중복학대 중 성학대가 포함된 사례까지 포함하여 총 6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고, 한 번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성학대로 판정된 어린이집,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 어린이집, 특정 횟수로 두 번 이상 발생한 어린이집, 1개월에 한 번 성학대를 당했다는 사례는 각각 1개 (16.7%)의 어린이집에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학대 빈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2개(33.2%)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성학대 발생 빈도

(단위: 개, %)

성학대 발생 빈도	빈도	백분율
한 번	1	16.7
두 번 이상 (횟수파악 가능)	1	16.7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 발생)	1	16.7
1개월에 한 번	1	16.7
1개월에 몇 번	-	-
1주일에 한 번	-	-
1주일에 몇 번	-	-
매 일	-	-
기 타	-	-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2	33.2
합 계	6	100.0

(4) 방임 발생 빈도

방임으로 판정받은 사례는 중복학대 사례까지 포함하여 총 12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는데, 한 번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 일주일에 몇 번 방임 행위에 처하는 사례가 각각 3개(25.9%)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고,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횟수를 파악할 수 없거나 1개월에 몇 번, 또는 매일 방임의 상황에 있는 학대상황이 각각 1개 (8.3%)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방임 발생 빈도

(단위: 개, %)

방임 발생 빈도	빈 도	백분율
한 번	3	25.0
두 번 이상 (횡수파악 가능)	-	-
두 번 이상 (장기간 산발적 발생)	1	8.3
1개월에 한 번	-	-
1개월에 몇 번	1	8.3
1주일에 한 번	-	-
1주일에 몇 번	3	25.0
매 일	1	8.3
기 타	-	-
모름 또는 파악 안 됨	3	25.0
합 계	12	100.0

6.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결과

학대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 학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정된 91개의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 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5개 어린이집을 제외한 86개의 어린이집에 대해 하나 이상의 관련 조치들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4.5%에 해당하는 비율로, 아동학대를 판정받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종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Ⅲ-24〉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86	94.5
무	5	5.5
합 계	91	100.0

지난 3년간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행한 개입 및 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지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치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1) 전체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①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학대사례로 판정된 91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경험한 215명 아동에게 취해진 최종조치의 유무에 대한 결과를 <표 III-25>에 제시하였다.

먼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15명에게 내려진 최종조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74.9%에 해당하는 161명의 피해아동에게 평균 하나 이상의 최종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단위: 명,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161	74.9
무	54	25.1
합 계	215	100.0

②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학대를 판정받은 전체 215명에게 내려진 최종조치 결과는 <표 III-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아동 전체 215명에게 내려진 최종조치의 41.9%가 학대 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퇴원이었고 28.4%가 타 어린이집으로 전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내려진 최종조치의 약 70%가 학대발생 어린이집으로부터의 이탈조치임을 알 수 있었다. 상담, 치료, 심리검사, 교육 등의 조치를 받은 아동은 각각 30명(13.9%), 12명(5.6%), 7명(3.3%), 2명(0.9%)로 나타나 이들 조치를 받은 피해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명, %)

조치 내용	빈 도	백분율
상담	30	13.9
심리검사	7	3.3
치료	12	5.6
교육	2	0.9
타 어린이집 전원	61	28.4
어린이집 퇴원	90	41.9
격리보호	-	-
가정 지원 및 모니터링 권고	13	6.0
합 계	215	100.0

(2)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①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어린이집에서 2명이상의 아동이 학대판정을 받았을 경우, 각 어린이집에서 학대수준⁶⁾이 높은 아동을 각각 1명씩 선별하여 이들 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I-27〉은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을 어린이집 단위별로 선별하여 최종조치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이들의 83.5%에 해당하는 76명의 아동에게 하나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조치가 취해진 전체 피해아동 215명의 74.9%보다 약 8.6% 더 높은 비율이다.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최종조치 비율이 학대판정을 받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취해진 최종조치 비율보다 높다는 것은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에게 더 많은 최종조치가 취해진 것임을 의미한다.

〈표 III-27〉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유무

(단위: 명,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76	83.5
무	15	16.5
합 계	91	100.0

6) 폭력의 수준이 높거나 학대행위가 중복되거나 빈도가 빈번한 아동을 학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선별하였으며, 학대수준이 동일하게 보고된 아동들의 경우에는 랜덤으로 아동을 선별하였다.

②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어린이집을 단위로 하여 학대수준이 높은 91명의 최종조치 결과에 대한 분석 역시 전체 아동 215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는 <표 III-28>에 요약하였다. 최종조치를 받은 아동들 중 어린이집 퇴원이 43명(42.2%), 타 어린이집 전원이 25명(24.5%)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단위의 피해아동 91명에게 내려진 최종조치의 약 62%가 학대발생 어린이집으로부터의 이탈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의 조치를 받은 아동은 각각 15명(14.7%), 3명(2.9%), 8명(7.9%), 2명(1.9%)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피해아동의 가정에 지원을 하거나 가정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례도 6명(5.9%)에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의 조치는 학대사례로 판정된 전체 215명의 아동에게 취해진 최종조치의 23.7%에 해당하였고, 어린이집을 단위로 하는 91명의 아동들에게 취해진 최종조치의 2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의 조치가 더 내려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8> 어린이집 단위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명, %)

조치 내용	빈 도	백분율
상담	15	14.7
심리검사	3	2.9
치료	8	7.9
교육	2	1.9
타 어린이집 전원	25	24.5
어린이집 퇴원	43	42.2
격리보호	-	-
가정 지원 및 모니터링 권고	6	5.9
합 계	102	100.0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①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유무

91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자는 4개 어린이집에서 2명의 행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총 9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65.3%에 해당하는 62명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최종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29〉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유무

(단위: 명, %)

최종조치 유무	빈 도	백분율
유	62	65.3
무	33	34.7
합 계	95	100.0

②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학대행위자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는 고소고발이 31건(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1건(26.9%)으로 나타나 고소고발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30〉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건, %)

조치 내용	빈 도	백분율
고소고발	31	39.8
자격정지	4	5.1
자격취소	2	2.6
벌금	9	11.5
과태료	2	2.6
해임	21	26.9
징계	-	-
교육	6	7.7
기타	3	3.8
합 계	78	100.0

벌금 및 교육의 최종조치를 받은 사례는 각각 9건(11.5%), 6건(7.7%)이었고,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는 4건(5.1%)으로 나타났다. 자격취소 및 과태료는 각각 2건(2.6%)씩 조치가 내려졌다. 기타 3건(3.8%)의 조치는 행위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한 사례가 1건, 상담이나 심리검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1건, 해당 관할 시에 자격취소를 의뢰한 사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조치내용 및 분포는 <표 III-3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

학대판정을 받은 91개의 어린이집 중 61개(67%)의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종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빈도	백분율
유	61	67.0
무	30	33.0
합계	91	100.0

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학대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내린 조치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III-31>에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이 23건(26.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정 기간 보조금 중지 및 반환이 각각 13건(15.1%), 11건(12.8%)으로 나타나,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및 폐쇄의 조치를 받은 사례도 각각 9건(10.5%), 10건(11.7%)으로 나타나, 강력처벌도 상당히 많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및 취소가 내려진 사례는 각각 4건(4.7%), 1건(1.2%)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들 사례 모두 원장이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평가인증에서 제외된 사례가 3건(3.4%), 벌금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2건(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는 6

건(7%)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대판정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폐쇄조치를 받았으나, 어린이집에서 항소 중인 사례가 1건(1.2%) 보고되었다.

〈표 III-3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중복포함)

(단위: 건, %)

조치 내용	빈 도	백분율
고소고발	9	10.5
폐쇄	10	11.7
운영정지 및 평가인증 제외	3	3.4
보조금 반환	11	12.8
보조금 중지	13	15.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4	4.7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1	1.2
벌금	2	2.3
과태료	-	-
경고	3	3.4
모니터링	23	26.7
교육	6	7.0
CCTV설치 권고 및 지자체 지도점검	-	-
기타	1	1.2
합 계	86	100

7. 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비교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앞서 우리는 학대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대 사례는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에 대해서도 각기 학대유형별 예시를 제시하고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의 전반적 특성과 학대유형별 구체적 특징을 비교·대조하였다.

1) 잠재위험사례의 학대유형별 예시

먼저, 학대사례의 코딩시스템을 잠재위험사례에 그대로 적용하여 잠재위험사례의 각 학대별 빈도 및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31>에서부터 <표 III-34>까지에 제시하였다.

(1) 잠재위험사례 중 신체학대 의심사례

잠재위험사례 중 신체학대 의심사례는 하위행위에 따라 중복을 포함하여 총 93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들 중 아동을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무는 행위가 61건으로 잠재위험사례 신체학대 의심행위 전체의 65.5%에 해당하였다. 해당 학대의심 행위 중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졸린 아동의 다리와 등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조사결과 아동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고 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와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객관적 피해사실을 파악하기 힘든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사례는 객관적 피해사실은 확인이 어려웠지만 학대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 이 외에도 행위자가 아동을 거실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무릎이 멍이 들었다며 학대의심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도 포함되었는데, 해당사례는 정황상 학대발생 가능성이 의심되나 학대판정 근거가 부족하여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 잠재위험사례에서의 신체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관련 내용은 <표 III-33>에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표 III-33> 잠재위험사례 중 신체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신체학대 유형	어린이집 신체학대 의심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흔들기/잡아당기기/ 밀치기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담당교사가 때리고 팔을 잡아당겼다고 신고됨,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CCTV 확인 결과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려하지 않는 아동의 한쪽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행동 관찰됨, 담당교사의 보육태도가 향후 학대행위로 발전될 우려가 있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2	13.0

신체학대 유형	어린이집 신체학대 의심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물기	어린이집 교사가 졸린 아동의 다리와 등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됨, 조사결과 아동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고 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와의 진술이 불일치 한 등 객관적 피해사실 확인은 어려우나 학대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61	65.5
발로 차기/때리기	-	-	-
도구로 때리기	교사가 회초리로 아동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됨, 아동 등에 상흔이 있었으나 CCTV 상 학대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학대행위에 대한 아동진술이 번복되고 주변 목격자가 없어 해당 상흔의 발생장소가 어린이집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반대로 어린이집에서의 발생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 또한 불충분함에 따라 학대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6	6.5
물건 던지기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아동 앞에 가방을 던지고 물병을 던지며 아동을 밀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목격되어 신고됨, 아동진술이 없고 CCTV가 삭제되어 학대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목격자의 진술을 감안할 때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	1.0
기 타	아동을 거실장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아동 무릎에 멍이 들었다며 신고됨, 정황상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의심되나 아동을 비롯한 피해(목격) 진술이 없는 등 학대 피해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3	14.0
	합 계	93	100.0

(2) 잠재위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

잠재위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는 2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들 중 1건(50%)은 어린이집 이사장이 피해아동에게 뽀뽀를 했다고 아동이 말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 친모 앞에서 재연하였지만, 현장조사 시 다른 원아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사례에서 학대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 다른 1건(50%) 역시 운전기사가 피해아동의 몸을 만진 것으로 의심되어 신고·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및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

〈표 III-34〉 잠재위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성학대 유형	어린이집 성학대 의심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아동에게 키스하는 행위	피해아동이 이사장이 자신에게 뽀뽀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 상황을 재연하라고 했을 때 친모의 입속으로 혀를 살짝 넣었다고 하여 신고됨, 아동이 학대행위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다른 원아들의 목격진술이 없는 상황이나 학대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	50.0
기타	운전기사 아저씨가 피해아동의 몸을 만진 것으로 의심되어 신고됨, 하지만 누가 어떻게 어디를 만졌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학대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	50.0
합계		2	100.0

(3) 잠재위험사례 중 정서학대 의심사례

잠재위험사례 중 정서학대 의심사례 예시는 〈표 III-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정서학대의 하위행위 내용 중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및 기분을 무시·모욕하는 행위가 15건으로 잠재위험사례 정서학대 하위행위 전체의 44.1%로 나타났다. 이 행위의 예시로는 행위자가 아동을 복도에서 끌고 다녀 아동이 수치심을 느낀 사례가 있는데, 해당사례는 학대판정에 필요한 아동의 객관적 진술 및 증거가 부족하였지만 향후 학대의심 가능성이

있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잠재위험사례에서 많이 발생한 정서학대의 행위유형은 아동을 가두어 놓는 행위로 나타났다. 아동이 거실바닥의 전자레인지기를 눌렀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아동을 때리고 캄캄한 방에 문을 닫고 감금시켰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장조사 시 이에 관한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에서 냉방을 틀지 않아 아동이 탈진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학대의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 이 사례를 포함해 총 6건(17.7%)의 사건이 아동을 가둔 행위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 행위가 4건(11.8%), 공포분위기 조성행위 또는 위협행위, 폭력 노출행위가 각각 5건(14.7%), 1건(2.9%), 1건(2.9%)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35〉 잠재위험사례 중 정서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APSAC*의 정서학대 유형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정서학대 의심사례의 예	빈도	백분율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함”	아동을 복도에서 끌고 다녀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됨, 아동학대 판정에 필요한 아동 진술 및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나 피해의심이 제기된 바 향후 학대 위험에 있어서 예의주시되므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5	44.1
거부 또는 경멸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함”	원장이 아동들을 차로 데려다줬을 때 아동들에게 "지금 여기가 너희 집이니? 조용히 해"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고 신고됨, 아동 진술 없고, CCTV 등 학대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식품관리 등의 부적절성이 적발된 전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학대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됨	4	11.8

APSAC*의 정서학대 유형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정서학대 의심사례의 예	빈도	백분율
공포감 조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원장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신고됨, CCTV가 없고 신고 내용과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나 아동이 피해사실을 부정확하게나마 진술한 점, 외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대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5	14.7
	“아동을 내쫓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함”	보육교사가 아동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 신고됨,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이 불일치하고 아동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우나 교사의 훈육과정에서 ‘애기반에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있고 이러한 교사의 경고성 보육태도가 향후 학대발생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	2.9
	“아동에게 교사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킴”	아동이 원장님과 교사가 싸우는 것을 보았고 무서웠다거나 차에서 슬피 울었다며 신고됨, 조사결과 아동이 원장과 교사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다투는 장면을 우연하게 목격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으나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됨으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	2.9
	“아동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교사간 싸움 외)에 노출되었음”	원장실에서 다투는 장면을 아동이 우연하게 목격하게 되었으며 고의성은 없으나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로 간주하여 향후 학대발생가능성의 우려가 잠재함에 따라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2	5.9

APSAC*의 정서학대 유형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정서학대 의심사례의 예	빈도	백분율
고립 시키기	“아동을 가두어놓음”	아동이 거실바닥의 전자레인지 눌렀다고 뭐라고 하며 때리고 감 감한 방에 문을 닫고 감금시켰다 고 신고됨,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감금과 관련하여서는 입증 이 되지 않았으나 냉방을 틀지 않아 아동이 탈진한 적이 있는 점 등에서 향후 학대 발생 위험 에 대해 예의주시되므로 잠재위 험사례로 판정함	6	17.7
착취 및 타락 시키기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함”	-	-	-
합 계			34	100

(4) 잠재위험사례 중 방임 의심사례

잠재위험사례 중 방임 의심사례의 예시는 <표 III-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임 중 행위자가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물리적 환경에 아동을 방치한 사건이 6건(37.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른 아동을 돌보는 사이 해당 아동이 집으로 가게 된 사건이 이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은 일회성 사건으로 판단되었으나 시설에 걸림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어린이집 측 부주의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였다. 이 외에도 돌봄방임이 5건(31.4%), 의료방임이 1건(6.3%), 위생이나 시설관련 안전과 관련된 환경방임이 각각 2건(12.4%)씩 보고되었다.

〈표 III-36〉 잠재위험사례 중 방임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Knutson의 방임 유형	방임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의심사례의 예시	빈도	백분율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음”	아동들이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된다고 신고 됨, 현장조사 결과 실제 식단표와 다른 식사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음, 식단표와 다른 식사제공 행위가 실증적 학대행위는 아니었으나 원장이 부실식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학대행위의 위험이 있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3	18.8
돌봄방임	돌봄방임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음”	슈퍼에서 제일 싸게 파는 것으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신고 됨, 저렴한 가격의 식품 구입 및 제공이 실증적 학대행위는 아니었으나 친모상담과 어린이집 관리부적절성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학대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	6.3
		“음식이 신선도나 청결면에서 적절함”	슈퍼에서 제일 싸게 파는 것으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신고 됨, 현장조사 결과, 원내에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음식 재료가 없었고 중국산 식품이 있었음, 이것이 실증적인 학대행위가 아니나 친모상담과 어린이집 관리부적절성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학대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1	6.3

Knutson의 방입 유형	방입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입 의심사례의 예시	빈도	백분율
		“어린이집 아동의 물리적 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임”	다른 아동을 돌보는 사이 아동이 문을 열고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교사의 관리소홀에 대해 신고 됨, 시설 내 장치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실증적 학대행위보다는 위험상황의 야기가 고의적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향후 학대 위험에 대한 예의주시되므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함	6	37.5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	-
	환경 방입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음”	아동이 침대 기둥에 머리를 박아 멍이 든 것에 대해 방입이라고 신고 됨, 교사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상흔으로 실증적 학대행위는 아니지만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고 향후 학대 위험에 대해 예의주시되므로 잠재위험사례 판정함	2	12.4
		“아동을 위협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였음”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독이 올랐고 고무장갑을 끼고 갈아 엉덩이에 상처가 났다고 신고 됨, 교사의 신체질환(습진)을 사유로 아동 위생보호 차원에서 고무장갑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비고의적으로 발생한 상흔으로 실증적 학대행위는 아니지만 업무상과실에 해당됨에 따라 향후 학대위험이 있어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됨	2	12.4

Knutson의 방임 유형	방임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의심사례의 예시	빈도	백분율
의료방임	의료 방임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았음”	아동이 침대 기둥에 머리를 박아 멍이 든 것에 대해 방임 이라고 신고 됨, 교사의 고의 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상흔으로 실증적 학대 행위는 아니지만 업무상과실 에 해당되며 향후 학대행위 위험이 있으므로 잠재위험사 례로 판정함	1	6.3
감독 방임	감독 방임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두었음”	-	-	-
		“충분한 대체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동을 혼자 두었음”	-	-	-
합 계				16	100

2)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집단 비교

전반적인 특성과 학대유형별 특성에 따라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집단을 비교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특성 비교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에 따른 아동과 행위자의 성별 및 나이,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자 다수 여부,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자 유형, 신고년도, 지역 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분석결과는 <표 III-37>에 요약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중복학대의 유무,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두 판정유형 간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복학대의 경우 학대사례에서보다 잠재위험사례에서 학대유형의 중복 비율이 보다 높았다. 스크리닝 척도는 현장조사 시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는 척도(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로, 아동학대 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를 구분하고 학대유형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

한 척도이다. 학대사례의 경우 이 스크리닝 점수가 평균 3.29점인데 반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평균 1.64점으로 나타나 두 판정유형 간 약 2배 정도의 점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위험사례로 판정된 어린이집에서보다 학대사례로 판정된 어린이집에 있었던 아동들이 더욱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아동과 행위자의 성별이나 연령을 비롯하여 신고년도, 지역, 기관유형, 신고자 유형, 학대유형은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55	60.4	31	55.4	0.369
	여자	36	39.6	25	44.6	
행위자 성별	남자	12	12.6	5	8.3	0.696
	여자	83	87.4	55	91.7	
신고년도	2010	13	14.3	4	6.8	2.965
	2011	29	31.9	16	27.1	
	2012	49	53.8	39	66.1	
지역	서울권	18	19.8	8	13.6	1.103
	광역시권	16	17.6	12	20.3	
	경기도권	31	34.1	20	33.9	
	그 외 지역	26	28.5	19	32.2	
기관유형	민 간	53	58.2	40	67.8	3.080
	가 정	31	34.1	18	30.5	
	국공립 등	7	7.7	1	1.7	
신고자 유형	부모	58	63.7	37	62.7	6.061
	타원생 부모 등	4	4.4	7	11.9	
	전직 보육교사	4	4.4	2	3.4	
	현직 보육교사	4	4.4	5	8.5	
	복지·시설 종사자 익명 등	14	15.4	4	6.8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학대를 판정받은 91개 어린이집에서 총 215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남아가 119명(55.3%), 여아가 96명(44.7%)이었다. 이 아동들의 평균나이는 3.22세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에 비해 학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91개 어린이집 중 4개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자가 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95명의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87.4%인 83명이 여성이었고 12명(12.6%)이 남성이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분포하였으며, 95명의 학대행위자 중 41세-45세인 행위자가 19명(20%)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2명의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93명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39.57세로 나타났다.

또한 95명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중 학대행위자가 원장이거나 보육교직원인 경우가 전체의 88.3%를 차지해, 어린이집의 주 학대행위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특성

학대를 판정받은 91개 어린이집의 유형은 국공립이 5개, 민간이 53개, 가정이 31개, 기타 사회복지법인 기관 2개로 나타나, 민간이나 가정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판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의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를 한 신고자는 부모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9.9%, 현직 보육교직원과 전직 보육교직원이 각각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개 학대판정사례 중 단일학대는 72개(79.1%), 중복학대는 19개(20.9%) 어린이집에

등을 물건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학대사례에서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위를 중복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 역시 학대사례는 20%, 잠재위험사례는 4.4%로 나타나 학대사례에서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체학대의 유무에 따라서는 이 두 판정유형 간엔 차이가 없었지만, 구체적 행위 및 이들 행위의 중복에 따라서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여부를 가늠하는 데 있어 구체적 학대행위의 경중은 사례판정에 중요하게 관여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는 신체 손상여부, 도구 사용여부에 따라 두 판정유형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적 분석결과를 통해 보다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피해아동의 신체손상은 학대사례의 경우 67.2%가 해당하는 데 반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38.3%가 이에 해당하였고, 학대사례의 경우 28.4%의 행위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반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10.6%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학대행위의 결과 신체적인 해를 입거나 신체학대를 가하는 행위자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학대판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케 한다. 특히, 학대사례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아동들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신체적 상흔은 학대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정서학대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와 행위 빈도에 따라 두 판정유형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로 판정한 어린이집들 중 25%가 거부(경멸) 또는 착취, 고립 등의 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데 반해, 정서학대로 잠재위험사례를 판정받은 어린이집의 60.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부(경멸) 또는 착취, 고립의 정서학대 행위는 잠재위험사례가 아동학대사례에서보다 2배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아동에게 공포감을 주는 학대행위는 학대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학대 내에서 행위중복은 학대 판정사례에서 57.1%, 잠재위험 판정사례에서 16.1%로 나타나 학대 판정사례에서 아동들이 정서학대 행위들을 중복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비율 역시 과반수이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8〉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⁷⁾	흔들기/때리기	35	53.8	38	84.4	11.478**
	던지기/차기	17	26.2	5	11.1	
	중복	13	20.0	2	4.4	
신체 손상	유	45	67.2	18	38.3	9.310**
	무	22	32.8	29	61.7	
도구 사용	유	19	28.4	5	10.6	5.219*
	무	48	71.6	42	89.4	
행위자 수	단독	62	93.9	44	93.6	0.005
	2명 이상	4	6.1	3	6.4	
행위자 성별	남자	4	6.1	1	2.3	0.873
	여자	62	93.9	43	97.7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21	32.3	18	38.3	0.431
	보육교사	41	63.1	27	57.4	
	운전기사 등	3	4.6	2	4.3	
빈도	1회	46	70.8	25	55.6	2.689
	2회 이상	19	29.2	20	44.4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⁸⁾	거부 또는 착취 또는 고립	7	25.0	14	60.9	6.955**
	공포감	5	17.9	3	13.0	
	중복	16	57.1	6	16.1	
행위자 수	단독	27	96.4	22	95.7	0.020
	2명 이상	1	3.6	1	4.3	
행위자 성별	남자	-	-	2	8.7	-
	여자	28	100.	21	91.3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5	53.6	10	43.5	2.765
	보육교사	9	32.1	12	52.2	
	운전기사 등	4	14.3	1	4.3	
빈도	1회	10	35.7	5	22.7	6.101*
	2회 이상	7	25.0	13	59.1	
	2회 ↑ *2가지 ↑ ⁹⁾	11	39.3	4	18.2	

구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입						
행위 ¹⁰⁾ 구분	돌봄 및 의료 방입	3	25.0	10	90.9	-
	감독 방입	5	41.7	-	-	
	중복	4	33.3	1	9.1	
행위자 수	단독	10	83.3	11	100.0	-
	2명 이상	2	16.7	-	-	
행위자 성별	남자	-	-	1	9.1	-
	여자	11	100.0	10	90.9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5	41.7	7	63.6	-
	보육교사	7	58.3	4	36.4	
	운전기사 등	-	-	-	-	
빈도	1회	3	25.0	4	36.4	0.767
	2회 이상	5	41.7	5	45.5	
	2회 ↑*2가지 ↑	4	33.3	2	18.2	
성학대						
행위자 수	단독	6	100.0	3	100.0	-
	2명 이상	-	-	-	-	
행위자 성별	남자	6	100.0	3	100.0	-
	여자	-	-	-	-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	16.7	1	33.3	0.375
	보육교사	2	33.3	1	33.3	
	운전기사 등	3	50.0	1	33.3	
빈도	1회	1	25.0	1	100.0	-
	2회 이상	3	75.0	-	-	

*: <.05, **: p<.01, ***: p<.001, †: p<.10

- 7) ‘던지기/때리기’는 아동을 흔들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아동을 손이나 손바닥으로 꼬집거나 때리는 행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아동에게 해를 입힌 행위 모두를 포함하며, ‘던지기/차기’는 아동을 발로 때리거나 차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복’은 이 두 행위가 모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제시되는 신체학대의 모든 행위 구분은 이 구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8) ‘거부 또는 착취, 고립’은 아동의 인격, 감정 및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강요를 하는 행위, 아동을 가두어 놓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포감’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아동이 교사간의 싸움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복’은 이 두 행위가 모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제시되는 정서학대의 모든 행위 구분은 이 구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9) 정서학대는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하위 유형 중에서 학대 빈도가 각각 2회 이상인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고립시켰던 빈도가 2회 이상이면서 언어폭력을 2회 이상 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정서학대의 빈도 역시 2회 이상 학대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정서학대 행위를 중복으로 경험하는 빈도가 학대사례에서 39.3%로 잠재위험사례에서의 18.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학대의 경우 빈도가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간 차이가 없었던 것에 반해, 정서학대의 경우 두 판정유형 간 행위발생 빈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학대의 경우 외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정서학대의 경우 외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보다 적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행위에 비해 정서적 학대행위가 더욱 지속되거나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케 한다.

이처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일부 특성들은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방임과 성학대의 구체적인 특성들은 사례 수가 적어 두 판정유형 간 뚜렷한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 특성에 관해서는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대유형별 구체적 학대 특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구체적 행위에서는 좀 더 심각한 학대 행동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신체 손상이 있었던 경우가, 그리고 학대행위가 보다 빈번히 발생했을 때 학대사례로 분류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일반사례 학대유형별 예시

(1) 일반사례 중 신체학대 의심사례

일반사례의 학대유형별 예시는 <표 III-39>부터 <표 III-42>에 제시되어있다. 일반사례를 학대 하위행위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총 205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무는 행위가 142건으로 일반사례의 신체학대 하위행위에서 69.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들 중 하나의 사례는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목격되어 신고·접수되었으나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에게서 학대발생과 관련한 사실

10) ‘돌봄 및 의료’는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불균형적, 신선도가 낮고 청결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행위, 아동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행위,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감독방임’은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둔 행위, 충분한 대체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동을 혼자 둔 행위를 포함한다. ‘중복’은 이 두 행위가 모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제시되는 방임의 모든 행위 구분은 이 구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확인 불가능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체학대 의심사례의 유형은 도구로 때리는 행위로, 피해아동은 교사가 자신의 등을 파리채로 때렸다고 보고하였지만, 원에는 파리채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포함하여 총 24건(11.7%)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 외에도 아동을 흔들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것으로 신고된 사례 20건(9.7%), 아동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고 신고된 사례 9건(4.4%), 물건을 던진 행위가 1건(0.5%)의 사례들이 모두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표 III-39〉 일반사례 중 신체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신체학대 유형	어린이집 신체학대 의심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흔들기/잡아당기기/ 밀치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기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서 아기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는 것을 보고 신고 됨, 신고내용과 학대행위의 심자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아동진술이 확보 되지 않는 등 학대혐의를 찾을 수 없어 일반 사례 판정함	20	9.7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물기	교사가 아동의 얼굴을 꼬집었다고 신고 됨, 조사결과 꼬집어서 생긴 상처가 아닌 펜으로 찔리거나 뽀루지를 뜯어 딱지가 앉은 상태로 보이고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학대혐의를 찾을 수 없어 일반사례로 판정함	142	69.3
발로 차기/때리기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신고 됨,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의심자나 아동 등을 통해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9	4.4

신체학대 유형	어린이집 신체학대 의심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도구로 때리기	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책으로 때렸다는 의심이 되어 신고 됨, 신고내용과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며 아동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대로 판정이 불가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담임교사가 파리채로 아동의 등을 때렸다고 하여 신고 됨, 아동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상 학대행위가 관찰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내 파리채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24	11.7
물건 던지기	원장이 레고블럭 장난감을 아이들의 얼굴에 던져서 멍이 들게 하고 아동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신체학대가 의심되어 신고 됨, 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 및 부모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1	0.5
기 타	취사원이 아동의 손목을 가스 불에 댔다고 하여 신고 됨, 신고내용과 달리 아동 손목에 화상자국이 없고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나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9	4.4
합 계		205	100.0

(2) 일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

성학대 의심사례의 분석결과, 일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는 총 7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일반사례 중 성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성학대 유형	어린이집 성학대 의심사례 예시	빈도	백분율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짐	남자교사가 아동의 성기를 만졌다는 의심으로 신고 됨, 신고내용과 아동과 학대행위의 심자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6	85.7
손이나 도구를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넣음	아동이 모에게 똥꼬가 아프고 아저씨가 아프게 했다고 해 성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 함, 아동의 진술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학대사실 확인 안 됨, 정확한 진술 및 증거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연계 및 수사의뢰하였고 구체적 학대사실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 됨	1	14.3
합 계		7	100.0

이들 중 행위자가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등을 만졌던 것이 6건(85.7%)이었으며, 행위자가 손이나 도구를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넣는다고 의심된 일반사례가 1건(14.3%)이었지만 모두 학대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지는 행위로 의심된 사례 중 하나의 사례는 남자교사가 아동의 성기를 만졌다는 의심으로 신고된 사례로, 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의 진술이 불일치하며 학대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3) 일반사례 중 정서학대 의심사례

정서학대의 하위유형에 따라 일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97건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행위자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및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했던 행위가 46건(4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대의심행위의 예로는, 평소 주의가 산만한 6세 남아를 행위자가 지도의 목적으로 책걸상을 옮겨 교실 밖에서 수업을 듣게 하였는

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사가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책걸상을 두었고 아동에게 특별한 심리적 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고립시킨 것으로 의심된 행위가 각각 15건(15.5%), 15건(15.5%), 언어적 폭력 의심행위가 13건(13.4%)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동을 착취 및 타락시킨 행위, 위협한 행위, 폭력에 노출시킨 행위 등이 의심된 사례가 각각 4건(4.1%), 3건(3.1%), 1건(1%)으로 나타났고, 그 구체적인 예는 <표 III-41>에 요약하였다.

<표 III-41> 일반사례 중 정서학대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APSAC*의 정서학대 유형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정서학대 의심사례의 예	빈도	%
거부 또는 경멸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함”	아동의 책걸상을 교실 밖에 옮겨 수업을 듣게 하였다고 신고 됨, CCTV상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사가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책걸상을 두었고 아동에게 특별한 심리적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일반사례로 판정함	46	47.4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함”	7세반 형이 칼로 엉덩이를 찌시켰다고 했다는 말을 교사에게 이야기하자, 교사가 아동에게 ‘네가 그랬으니 개가 그러지’라고 오히려 아동을 혼냈다고 하여 신고 됨, 신고내용과 아동, 학대행위위험자,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13	13.4
공포감 조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아동을 20분 동안 세워놓고 억박지르고 다시 30-40분 방치했다고 신고 됨, CCTV 상 신고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내용과 아동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사례 판정함	15	15.5

APSAC*의 정서학대 유형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정서학대 의심사례의 예	빈도	%
	“아동을 내쫓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함”	교사가 아동에게 ‘밖으로 나가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여 신고 됨, 조사결과, 신고내용과 학대행위의심자의 진술이 상반되었고 아동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며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함	3	3.1
	“아동에게 교사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킴”	평가 인증준비 관련하여 원장과 교사 간 다툼이 있었다고 하여 신고 됨,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증거가 없어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 판정함	1	1.0
	“아동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교사간 싸움 외)에 노출되었음”	-	-	-
고립 시키기	“아동을 가두어놓음”	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남겨두고 돌보지 않은 일이 많아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 됨, 신고내용과 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 판정함	15	15.5
착취 및 타락 시키기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함”	아동모의 진술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포도씨를 뱉지 말라고 하여 아동이 포도씨를 물고 집에 온 적이 있다고 하여 신고 됨, 신고내용과 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 판정함	4	4.1
	합 계		97	100.0

(4) 일반사례 중 방임 의심사례

방임의 하위유형에 따라 일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8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위유형은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둔 행위로, 총 14건(24.1%)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례 중 하나의 사례는 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남겨둔 채 돌보지 않는 일이 많다는 학대의심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로, 현장조사 결과 아동을 혼자 둔 것이 아닌 혼자 손을 씻도록 한 상황으로 나타나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된 방임의심행위 유형은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9건(15.5%), 아동을 위협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사례가 8건(14%), 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제공하지 못한 사례와 필요한 의료처치를 행하지 못한 사례가 각각 6건(10.3%)씩 나타났다. 음식이 신선도나 청결 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례도 5건(8.7%)으로 보고되었으나 해당 방임의심사례들은 정황상 학대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표 III-42〉 일반사례 중 방임 의심사례 (중복포함)

(단위: 건, %)

Knutson의 방임유형	방임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의심사례의 예	빈도	백분율
돌봄방임	돌봄방임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음”	딱딱한 만두와 우유 없이 시리얼 과자만 제공하였다고 신고됨, 신고내용과 학대행위의심자나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고 원장과 부모들과의 감정적 문제, 교사와 원장과의 갈등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반사례로 판정함	9	15.5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부실하다며 신고됨, 신고내용과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함	6	10.3

Knutson의 방임유형	방임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의심사례의 예	빈도	백분율
환경 방임		“음식이 신선도나 청결면에서 적절함”	백태가 낀 김치, 썩든 감자를 요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다며 신고 됨,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해당시설이 폐원조치되어 의심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 판정함	5	8.7
		“어린이집 아동의 물리적 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침대 매트리스의 얼룩이 발견되어 신고 됨,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해당시설이 폐원조치되어 의심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 판정함	2	3.4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	-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위험요소가 없음”	아동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리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어린이집이 별다른 대처가 없다고 신고 됨, 신고내용과 달리 아동의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와 치과 검사 및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 일반사례 판정함	2	3.4
	“아동을 위협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였음”	원장이 아동의 위생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신고 됨, 신고내용과 학대행위 의심자나 주변인진술이 불일치하여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 판정함	8	14.0	

Knutson의 방임유형	방임하부 유형	연구에 사용된 코딩시스템 항목	어린이집 방임 의심사례의 예	빈도	백분율
의료방임	의료 방임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았음”	아동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리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어린이집이 별다른 대처가 없다고 신고 됨, 신고내용과 달리 아동의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와 치과 검사 및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 일반사례 판정함	6	10.3
감독 방임	감독 방임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두었음”	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남겨두고 돌보지 않은 일이 많아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 됨, 현장조사 결과 통해 아동을 혼자 둔 것이 아닌 아동 혼자 손을 씻게 하도록 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 판정함	14	24.1
		“충분한 대체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 동을 혼자 두었음”	아동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 혼자 두고 나온 적이 있다고 하여 신고 됨, 신고내용과 학대행위의심자나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고 CCTV 증거가 없어 학대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사례 판정함	6	10.3
합 계				58	100.0

4)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집단 비교

전반적인 특성과 학대유형별 특성에 따라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집단을 비교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특성 비교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비교한 결과, 행위자 성별,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 여부, 행위자 연령과 스크리닝 점수, 신고된 아동 수에 따라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학대사례에서는 12.6%인 반면, 일반사례에서는 4%로 나타나, 학대사례에서의 행위자가 남자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부모가 신고한 사례가 학대사례에서는 63.7%, 일반사례에서는 74.7%로 나타나 부모의 신고율이 일반사례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고자에 대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학대사례의 경우 신고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17.6%, 일반사례의 경우 7.7%로 나타나, 학대사례의 경우가 일반사례의 경우보다 신고자가 신고의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사례에서의 부모 신고의 높은 비율은 부모가 아동의 상처나 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학대사례에서 신고의무자의 다소 높은 비율은 아동학대 상황을 파악하면 다른 판정사례유형보다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행위자 연령의 경우 학대사례에서는 평균이 약 40세인 반면, 일반사례에서는 약 36세로 나타나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에서 행위자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닝 점수와 신고·접수된 아동의 수 역시 일반사례에서보다는 학대사례에서보다 점수가 높고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례로 판정한 어린이집에서보다 학대사례로 판정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이 보다 심각한 학대의 상황 안에 있었으며, 해당 아동 수도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표 III-43〉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55	60.4	161	54.6	0.970
	여자	36	39.6	134	45.4	
행위자 성별	남자	12	12.6	12	4.0	9.479**
	여자	83	87.4	289	96.0	
신고년도	2010	13	14.3	27	8.7	6.157*
	2011	29	31.9	74	23.7	
	2012	49	53.8	211	67.6	
지역	서울권	18	19.8	57	18.3	4.890
	광역시권	16	17.6	83	26.6	
	경기도권	31	34.1	110	35.3	
	그 외 기타	26	28.5	62	19.9	
기관유형	민 간	53	58.2	176	56.8	2.955
	가 정	31	34.1	90	29.0	
	국공립 등	7	7.7	44	14.2	
신고자 유형	부모	58	63.7	233	74.7	12.454*
	타원생 부모 등	4	4.4	29	9.3	
	전직 보육교사	4	4.4	8	2.6	
	현직 보육교사	4	4.4	6	1.9	
	복지·시설 종사자 익명 등	14	15.4	23	7.4	
신고의무 유무	유	16	17.6	24	7.7	7.708**
	무	75	82.4	288	92.3	
신체학대	유	67	73.6	231	74.0	0.006
	무	24	26.4	81	26.0	
정서학대	유	28	30.8	80	25.6	0.944
	무	63	69.2	232	74.4	
방임	유	12	13.2	36	11.5	0.182
	무	79	86.8	276	88.5	
성학대	유	6	6.6	11	3.5	1.641
	무	85	93.4	301	96.5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복학대	유	19	20.9	51	16.5	0.957
	무	72	79.1	259	83.5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72	79.1	259	83.5	2.940
	2개	16	17.6	48	15.5	
	3개	3	3.3	3	1.0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3.22	1.800	3.33	1.582	-.557
행위자 연령	39.57	10.338	36.37	9.029	2.647**
스크리닝 점수	3.29	7.479	.96	1.049	15.525***
신고 아동 수	3.45	1.61	1.61	7.392	2.086*
판정 아동 수	2.36	3.234	1.55	7.211	1.535

*; p<.05, **; p<.01, ***; p<.001, †; p<.10

(2) 학대유형별 비교

학대유형별 구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44>에 제시하였다. 신체학대에서는 행위자 수를 제외한 구체적 행위 내용, 신체손상 여부, 도구사용 여부, 행위자의 성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빈도 등 거의 모든 변수에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 구체적 행위,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빈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방임과 성학대의 경우 학대사례와 일반사례에 대해 특정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신체학대의 경우, 아동을 흔들고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및 때리는 행위가 일반사례에서 85.2%로, 학대사례에서의 53.8%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건을 아동에게 던지거나 발로 아동을 차는 행위는 학대사례에서, 그리고 신체학대의 하위 유형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역시 학대사례에서 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이 있는 경우는 학대사례에서 67.2%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일반사례에서는 32.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판정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학대사례에서 28.4%가 해당하는 데 반해 일반사례에서는 14.7%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체학대를 행하는 행위자는 학대사례에서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 및 대표 또는 원장이 행위자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빈도는 일반사례에서 학대사례에서보다 신체학대 더 자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학대의 경우, 거부(경멸) 또는 착취, 또는 고립의 정서학대 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일반사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공포감과 각 정서학대 하위행위 유형들 간의 중복을 경험하는 비율이 일반사례에서보다 학대사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행위자 역시 이어나 대표, 또는 원장인 비율이 일반사례에서보다 학대사례에서 더욱 높으며, 정서학대의 빈도는 하위유형의 정서학대를 중복으로 경험하면서 이러한 학대가 2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학대사례의 경우 39.3%, 일반사례의 경우 5%로 나타나, 학대사례에서 훨씬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성학대의 경우 적은 사례수로 인해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 차이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표 III-44〉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흔들기/때리기	35	53.8	190	85.2	28.996***
	던지기/차기	17	26.2	18	8.1	
	중 복	13	20.0	15	6.7	
신체 손상	유	45	67.2	76	32.9	25.282***
	무	22	32.8	155	67.1	
도구 사용	유	19	28.4	34	14.7	6.522*
	무	48	71.6	197	85.3	
행위자 수	단독	62	93.9	218	96.5	0.824
	2명 이상	4	6.1	8	3.5	
행위자 성별	남자	4	6.1	4	1.9	3.054†
	여자	62	93.9	205	98.1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21	32.3	39	17.1	7.926*
	보육교사	41	63.1	182	79.8	
	운전기사 등	3	4.6	7	3.1	
빈도	1회	46	70.8	131	57.7	3.610†
	2회 이상	19	29.2	96	42.3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거부 또는 착취 또는 고립	7	25.0	54	69.2	17.753***
	공포감	5	17.9	9	11.5	
	중복	16	57.1	15	19.2	
행위자 수	단독	27	96.4	76	95.0	0.096
	2명 이상	1	3.6	4	5.0	
행위자 성별	남자	-	-	4	5.3	-
	여자	28	100.0	71	94.7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5	53.6	15	19.0	23.280***
	보육교사	9	32.1	63	79.7	
	운전기사 등	4	14.3	1	1.3	
빈도	1회	10	35.7	35	43.8	21.091***
	2회 이상	7	25.0	41	51.3	
	2회 ↑ *2가지 ↑ ¹¹⁾	11	39.3	4	5.0	
방 입						
구체적 행위	돌봄 및 의료	3	25.0	20	55.6	4.597
	감독	5	41.7	12	33.3	
	중복	4	33.3	4	11.1	
행위자 수	단독	10	83.3	36	100.0	-
	2명 이상	2	16.7	-	-	
행위자 성별	남자	-	-	-	-	-
	여자	11	100.0	35	100.0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5	41.7	16	44.4	-
	보육교사	7	58.3	19	52.8	
	운전기사 등	-	-	1	2.8	
빈도	1회	3	25.0	13	40.6	1.933
	2회 이상	5	41.7	14	43.8	
	2회 ↑ *2가지 ↑	4	33.3	5	15.6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학대						
행위자 수	단독	6	100.0	11	100.0	-
	2명 이상	-	-	-	-	
행위자 성별	남자	6	100.0	8	72.7	-
	여자	-	-	3	27.3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	16.7	1	9.1	0.215
	보육교사	2	33.3	4	36.4	
	운전기사 등	3	50.0	6	54.5	
빈 도	1회	1	25.0	1	12.5	0.300
	2회 이상	3	75.0	7	87.5	

*; p<.05, **; p<.01, ***; p<.001, †; p<.10

이상에서 볼 때 학대사례와 일반사례 간에는 전반적 특성에 있어 행위자 성별, 신고자 유형 및 신고의무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고 학대유형별 구체적 학대 특성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일반사례에 비해 학대사례가 더 심각한 학대행위나 신체손상, 도구사용 등에 연루되어 있었고,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학대사례로 분류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5)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집단 비교

학대사례를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와 비교하는 것 외에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의 비교를 통해 학대사례와 이들 판정유형 간의 차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특성과 학대유형에 따라 이들 판정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특성 비교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의 전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 기관유형, 신고의무 유무, 정서학대 유무, 중복학대 유무, 중복학대의 수,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이들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정서학대는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하위 유형 중에서 학대 빈도가 각각 2회 이상인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고립시켰던 빈도가 2회 이상이면서 언어폭력을 2회 이상 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기관유형이 민간과 가정인 경우가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일반사례의 경우 약 86%정도가 이에 해당하였고, 상대적으로 국공립 비율이 높았다. 정서학대 및 중복지대가 의심되는 경우 잠재위험사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복지대의 수가 2개이거나 3개인 경우 역시 잠재위험사례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서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판정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31	55.4	161	54.6	0.012
	여자	25	44.6	134	45.4	
행위자 성별	남자	5	8.5	12	4.0	2,208
	여자	54	91.5	289	96.0	
신고년도	2010	4	6.8	27	8.7	0.462
	2011	16	27.1	74	23.7	
	2012	39	66.1	211	67.6	
지역	서울권	8	13.6	57	18.3	4.870
	광역시권	12	20.3	83	26.6	
	경기도권	20	33.9	110	35.3	
	그 외 지역	19	32.2	62	19.9	
기관유형	민 간	40	67.8	176	56.8	7.415*
	가 정	18	30.5	90	29.0	
	국공립 등	1	1.7	44	14.2	
신고자 유형	부모	37	62.7	233	74.7	9.386†
	타원생 부모 등	7	11.9	29	9.3	
	전직 보육교사	2	3.4	8	2.6	
	현직 보육교사	5	8.5	6	1.9	
	복지·시설 종사자	4	6.8	23	7.4	
	익명 등	4	6.8	13	4.2	
신고의무유 무	유	9	15.3	24	7.7	3.501†
	무	50	84.7	288	92.3	

구 분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유	47	79.7	231	74.0	0.835
	무	12	20.3	81	26.0	
정서학대	유	23	39.0	80	25.6	4.404*
	무	36	61.0	232	74.4	
방임	유	11	18.6	36	11.5	2.264
	무	48	81.4	276	88.5	
성학대	유	3	5.1	11	3.5	0.332
	무	56	94.9	301	96.5	
중복학대	유	22	37.3	51	16.5	13.561***
	무	37	62.7	259	83.5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37	62.7	259	83.5	14.054**
	2개	20	33.9	48	15.5	
	3개	2	3.4	3	1.0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3.09	1.725	3.33	1.582	-0.980	
행위자 연령	36.77	9.910	36.37	9.029	0.284	
스크리닝 점수	1.64	1.267	.96	1.049	4.275***	
신고 아동 수	2.49	17.500	1.61	7.392	0.641	
판정 아동 수	3.14	7.940	1.55	7.211	1.525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2) 학대유형별 비교

학대유형에 따라 학대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46>에 제시하였다. 신체학대의 경우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가, 정서학대의 경우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및 빈도가, 방임의 경우 학대행위 내용과 행위자의 성별이, 성학대의 경우 빈도에 따라 두 판정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성학대의 경우 관련된 잠재위험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평균비교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분석이 진행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특성에서는 행위자 관계 이외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6〉 학대유형별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비교

(단위: 건, %)

구 분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흔들기/때리기	38	52.1	190	85.2	0.713
	던지기/차기	5	22.7	18	8.1	
	중복	2	4.4	15	6.7	
신체 손상	유	18	38.3	76	32.9	0.508
	무	29	61.7	155	67.1	
도구 사용	유	5	10.6	34	14.7	0.539
	무	42	89.4	197	85.3	
행위자 수	단독	44	93.6	218	96.5	0.813
	2명 이상	3	6.4	8	3.5	
행위자 성별	남자	1	2.3	4	1.9	0.024
	여자	43	97.7	205	98.1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8	38.3	39	17.1	11.178**
	보육교사	27	57.4	182	79.8	
	운전기사 등	2	4.3	7	3.1	
빈도	1회	25	35.2	131	57.7	0.071
	2회 이상	20	51.3	96	42.3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거부 또는 착취 또는 고립	14	60.9	54	69.2	0.620
	공포감	3	13.0	9	11.5	
	중복	6	16.1	15	19.2	
행위자 수	단독	22	95.7	76	95.0	0.016
	2명 이상	1	4.3	4	5.0	
행위자 성별	남자	2	8.7	4	5.3	0.346
	여자	21	91.3	71	94.7	

구 분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0	43.5	15	19.0	7.064*
	보육교사	12	52.2	63	79.7	
	운전기사 등	1	4.3	1	1.3	
빈 도	1회	5	22.7	35	43.8	5.968†
	2회 이상	13	59.1	41	51.3	
	2회↑*2가지↑ ¹²⁾	4	18.2	4	5.0	
방 임						
구체적 행위	돌봄 및 의료	10	90.9	20	55.6	-
	감독	-	-	12	33.3	
	중복	1	9.1	4	11.1	
행위자 수	단독	11	100.0	36	100.0	-
	2명 이상	-	-	-	-	
행위자 성별	남자	1	9.1	-	-	-
	여자	10	90.9	35	100.0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7	63.6	16	44.4	-
	보육교사	4	36.4	19	52.8	
	운전기사 등	-	-	1	2.8	
빈도	1회	4	36.4	13	40.6	0.076
	2회 이상	5	45.5	14	43.8	
	2회↑*2가지↑	2	18.2	5	15.6	
성학대						
행위자 수	단독	3	100.0	11	100.0	-
	2명 이상	-	-	-	-	
행위자 성별	남자	3	100.0	8	72.7	-
	여자	-	-	3	27.3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	33.3	1	9.1	1.188
	보육교사	1	33.3	4	36.4	
	운전기사 등	1	33.3	6	54.5	
빈도	1회	1	100.0	1	12.5	-
	2회 이상	-	-	7	87.5	

*, p<.05, **, p<.01, ***, p<.001, †, p<.10

12) 정서학대는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하위 유형 중에서 학대 빈도가 각각 2회 이상인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고립시켰던 빈도가 2회 이상이면서 언어폭력을 2회 이상 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볼 때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간에는 전반적 특성에 있어 어린이집 기관유형, 신고자 유형 및 신고의무 여부, 중복학대 유무 및 그 수에서 차이를 보였고 학대유형별 구체적 학대 특성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간의 명확한 차이를 구분해 내기에는 자료의 제한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었다.

8. 최종조치 결과에 따른 비교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는 초기조치 및 최종조치 결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조치결과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지는 조치결정이다. 반면, 최종조치결과는 아동학대사례 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는 형사소송 중인 특수사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례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종조치결과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판정유형별 최종조치가 어떠한 형태로 내려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향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지침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종조치가 내려진 사례들만을 추출하여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에서 비교한 여러 특성들을 최종조치에 따라 다시금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징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 판정유형 및 대상별 최종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최종조치를 각 판정유형별, 대상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I-47>와 <표 III-48>에 제시하였다.

(1)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91개의 학대사례 중 94.5%에 해당하는 86개의

사례에 최종조치가 내려졌으며, 잠재위험사례는 44개(74.6%), 일반사례는 135개(43.3%)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순으로 최종조치가 내려진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판정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최소 1개 이상의 최종조치를 처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유무는 <표 III-4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II-47> 판정유형별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유	86	94.5	44	74.6	135	43.3
무	5	5.5	15	25.4	177	56.7
계	91	100.0	59	100.0	312	100.0

(2) 대상별 최종조치

① 대상별 최종조치 유무

최종조치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내릴 수 있는데, 피해아동의 경우 전체 학대사례의 83.5%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에게 최종조치를 내렸으며, 잠재위험사례는 전체 해당아동의 46.6%, 일반사례는 전체 해당아동의 31.7%에게 최종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의 83.5%에게 내린 최종조치는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에서의 피해아동 46.6%, 31.7%에게 내린 최종조치 비율보다 더욱 높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학대사례의 65.9%, 잠재위험사례의 35.6%, 일반사례의 16.7%에 최종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대사례의 68.1%, 잠재위험사례의 57.6%, 일반사례의 25%에 최종조치를 내렸다.

학대사례의 경우 최종조치는 피해아동에게,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최종조치를 가장 많이 취했다. 일반사례의 경우 최종조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아동에게 내려진 최종조치의 비율이 31.7%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나 어린이집에 내려진 최종조치의 비율인 16.7%, 25% 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대상별 최종조치 유무

(단위: 개, %)

최종조치 유무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아동	유	76	83.5	27	46.6	99	31.7
	무	15	16.5	31	53.4	213	68.3
학대 행위자 ¹³⁾	유	60	65.9	21	35.6	52	16.7
	무	31	34.1	38	64.4	260	83.3
어린이집	유	62	68.1	34	57.6	78	25.0
	무	29	31.9	25	42.4	234	75.0
기타	유	85	93.4	58	98.3	309	99.0
	무	6	6.6	1	1.7	3	1.0
합 계		91	100.0	59	100.0	312	100.0

② 대상유형별 최종조치

〈표 III-49〉에 나타난 것처럼, 최종조치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내려지는데, 이들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최종조치가 내려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총 462건의 사례 중 학대판정 유형에 상관없이, 피해아동에게만 조치를 한 사례가 55건으로 이는 전체 462건 중 21.6%에 해당한다. 가해자에게만 조치한 사례는 9건(3.5%),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례는 31건(12.2%)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조치한 사례는 23건(9%),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아동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종조치를 한 사례가 42건(16.5%), 어린이집 운영과 가해자와 관련하여 최종조치를 한 사례가 20건(7.8%)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가해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두에 최종조치를 한 사례는 75건으로 전체의 2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91개 어린이집을 단위로 분석 시 한 개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자가 복수인 경우 강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행위자 1명을 선별하여 분석에 진행하였다. 학대행위자의 복수를 포함할 경우 62명의 행위자에게 최종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대상유형별 최종조치

(단위: 건, %)

구 분	빈 도	백 분 율
피해아동만 조치	55	21.6
행위자만 조치	9	3.5
어린이집만 조치	31	12.2
피해아동/행위자만 조치	23	9.0
피해아동/어린이집만 조치	42	16.5
어린이집/행위자만 조치	20	7.8
피해아동/행위자/어린이집 조치	75	29.4
합 계	255	100.0

(3) 대상별 최종조치 세부사항

①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 타 어린이집 전원, 어린이집 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에게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이 최종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20건(19.8%), 어린이집의 전원 및 퇴원을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63건(62.4%), 모니터링 및 격리 보호 등의 기타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6건(5.9%)로 나타났다. 이들 조치를 중복으로 받은 사례도 12건(11.9%)으로 보고되었다.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교육을 받은 사례가 8건(20.5%), 어린이집 전원 및 퇴원을 조치 받은 사례는 22건(56.4%), 모니터링 및 기타 보호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3건(7.7%), 그리고 이들을 동시에 조치 받은 사례는 6건(15.4%)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례 역시,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에서처럼 어린이집의 전·퇴원을 조치 받은 사례가 81건(61.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담이나 심리, 치료 및 교육이 26건(19.8%), 모니터링 및 기타 보호 조치가 12건(9.2%), 그리고 이들의 중복조치가 12건(9.2%)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 포함)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담, 심리검사, 치료, 교육	20	19.8	8	20.5	26	19.8
어린이집 전·퇴원	63	62.4	22	56.4	81	61.8
모니터링 및 기타	6	5.9	3	7.7	12	9.2
중 복	12	11.9	6	15.4	12	9.2
합 계	101	100.0	39	100.0	131	100.0

②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51〉에 제시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는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취소, 벌금, 과태료, 해임, 징계, 교육 등이 있다. 이를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취소, 해임을 하나의 유형으로, 벌금과 과태료 및 징계를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그리고 교육 및 사직을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학대판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51〉과 같다. 학대행위자에게 내린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해임 등의 조치는 학대사례에서 49건이 보고되어 학대사례 행위자에 대한 전체 최종조치의 64.5%를 차지한 반면, 잠재위험사례에서는 9%, 일반사례에서는 2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례의 경우 고소고발의 최종조치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각하된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학대행위 여부를 떠나 학대의심으로 신고·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학대행위의심자를 해임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표 III-51〉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 (중복포함)

(단위: 개,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취소, 해임	49	64.5	2	9.0	14	26.9
벌금, 과태료, 징계	9	11.8	0	0.0	0	0.0
교육, 사직	10	13.2	19	86.5	38	73.1
중 복	8	10.5	1	4.5	0	0.0
합 계	76	100.0	22	100.0	52	100.0

③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

어린이집 운영과 관한 최종조치는 고소고발, 폐쇄, 보조금 반환 및 중지, 벌금, 과태료, 운영정지 및 평가인증 제외, 경고, 모니터링, 교육, CCTV 설치 권고 및 지자체 점검 등이 포함되었다. 이 최종조치를 조치 수준에 따라 고소고발과 폐쇄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조금 반환 및 중지, 벌금, 과태료, 운영정지 및 평가인증 제외를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경고 및 모니터링을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52>와 같다. 어린이집에 대해 내려진 최종조치의 경우 학대사례는 고소고발 및 폐쇄의 조치가 전체의 24.4%에 내려진데 반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2.8%, 일반사례의 경우 12.3%가 이 조치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세부사항(중복포함)

(단위: 개,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소고발, 폐쇄	22	24.4	1	2.8	10	12.3
보조금 반환, 중지, 벌금, 과태료, 운영정지 및 평가인증제외	27	30.0	1	2.8	2	2.4
경고, 모니터링, 교육, CCTV설치권고	28	31.1	33	91.6	68	82.9
중복	13	14.5	1	2.8	2	2.4
합계	90	100.0	36	200.0	82	100.0

일반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고소고발, 폐쇄 뿐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고소고발 등도 포함하고 있어 다소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경고 및 CCTV 설치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학대사례의 경우 28건으로 전체의 31.1%인데 반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전체의 91.6%, 일반사례의 경우 전체의 8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대사례를 제외한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는 다소 경중이 낮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최종조치 수준에 따른 대상별 비교

앞서 기술된 것처럼, 학대판정유형에 따라 최종조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최종조치의 수준의 경중을 구분하여 중한 최종조치가 내려진 집단과 최종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 간 차이를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어린이집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은 상담 및 치료가 연계된 유형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학대판정유형과 행위자 성별, 방임 및 성학대 유무,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판정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에서 상담 및 치료연계 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이 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치료를 연계 받는 피해아동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아동에 비해 학대행위자가 남성인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상대적으로 더욱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도 아동의 최종조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담 및 치료를 연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기타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상담 및 치료연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고 반대로 성학대의 경우 상담 및 치료연계로 이어지는 비율이 보다 높았다. 스크리닝 점수는 상담 및 치료를 연계 받은 집단에서 평균 2.20, 아무런 최종조치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 1.262로 나타나 최종조치를 받는 집단에서의 스크리닝 점수가 약 1점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전반적 특성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단위: 개, %)

구분		상담 및 치료 연계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판정 유형	학대판정	18	36.0	15	5.8	42.756***
	잠재위험판정	8	16.0	31	12.0	
	일반판정	24	48.0	213	82.2	

구분		상담 및 치료 연계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29	58.0	132	54.8	0.175
	여자	21	42.0	109	45.2	
행위자 성별	남자	7	14.0	10	3.9	8.013**
	여자	43	86.0	244	96.1	
신고년도	2010	7	14.0	24	9.2	5.397†
	2011	18	36.0	61	23.5	
	2012	25	50.0	259	67.3	
지역	서울권	9	18.0	49	18.9	7.070†
	광역시권	9	18.0	62	23.9	
	경기도권	16	32.0	106	40.9	
	그 외 지역	16	32.0	42	16.2	
기관유형	민 간	26	52.0	152	59.1	1.900
	가 정	14	28.0	72	28.0	
	국공립 등	10	20.0	33	12.8	
신고자 유형	부모	34	68.0	182	70.3	-
	타원생 부모 등	4	8.0	21	8.1	
	전직 보육교사	2	4.0	7	2.7	
	현직 보육교사	2	4.0	8	3.1	
	복지·시설 종사자 익명 등	-	-	17	6.6	
신고의무 유무	유	9	18.0	27	10.4	2.336
	무	41	82.0	232	89.6	
신체학대	유	36	72.0	191	73.7	0.065
	무	14	28.0	68	26.3	
정서학대	유	12	24.0	69	26.6	0.151
	무	38	76.0	190	73.4	
방임	유	-	-	35	13.5	-
	무	50	100.0	224	86.5	
성학대	유	8	16.0	5	1.9	20.585***
	무	42	84.0	254	98.1	

구 분		상담 및 치료 연계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복학대	유	6	12.0	43	16.7	0.699
	무	44	88.0	214	83.3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44	88.0	215	83.3	-
	2개	6	12.0	40	15.5	
	3개	-	-	3	1.2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3.48	1.764	3.22	1.605	-.959
행위자 연령	36.29	8.867	37.15	9.601	0.583
스크리닝 점수	2.20	1.841	1.12	1.262	-5.072***
신고 아동 수	3.28	9.212	1.11	9.762	-1.511
판정 아동 수	2.82	8.310	1.44	7.432	-1.093

*; p<.05, **; p<.01, ***; p<.001, †; p<.10

(2)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을 분석¹⁴⁾한 결과, 신체학대의 몇몇 특성들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의 경우 최종조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의 경우 행위자 수에 따라서는 최종조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학대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단위: 개, %)

구 분		상담 및 치료 연계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흔들기/때리기	27	77.1	158	85.9	3.049
	던지기/차기	3	8.6	15	8.2	
	중복	5	14.3	11	6.0	

14)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어린이집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의 비교는 방임과 성학대의 경우 최종조치 수준을 구분할 만큼의 사례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구분	상담 및 치료 연계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 손상	유	18 50.0	65 34.0	3.330†	
	무	18 50.0	126 66.0		
도구 사용	유	7 19.4	24 12.6	1.216	
	무	29 80.6	167 87.4		
행위자 수	단독	31 86.1	182 97.8	10.685**	
	2명 이상	5 13.9	4 2.2		
행위자 성별	남자	-	3 1.8	-	
	여자	34 100.0	168 98.2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7 19.4	37 19.5	-	
	보육교사	29 80.6	146 76.8		
	운전기사 등	-	7 3.7		
빈도	1회	22 61.1	111 59.4	0.039	
	2회 이상	14 38.9	76 40.6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거부·착취·고립	6 54.5	47 68.1	2.173	
	공포감	1 9.1	10 14.5		
	중복	4 36.4	12 17.4		
행위자 수	단독	10 83.3	66 95.7	2.678	
	2명 이상	2 16.7	3 4.3		
행위자 성별	남자	-	3 4.7	-	
	여자	12 100.0	61 95.3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5 45.5	17 24.6	-	
	보육교사	6 54.5	50 72.5		
	운전기사 등	-	2 2.9		
빈도	1회	5 41.7	27 39.1	3.197	
	2회 이상	4 33.3	36 52.2		
	2회↑*2가지↑ ¹⁵⁾	3 25.0	6 8.7		

*, p<.05, **, p<.01, ***, p<.001, †: p<.10

15) 정서학대는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하위 유형 중에서 학대 빈도가 각각 2회 이상인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고립시켰던 빈도가 2회 이상이면서 언어폭력을 2회 이상 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볼 때 피해아동에게 내린 최종조치는 학대판정 유형, 행위자 성별, 성학대 여부, 스크리닝 점수 등의 전반적인 특징에 있어 중한 최종조치가 내려진 집단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의 경우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에 보다 중한 최종조치가 내려졌으며, 학대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나 성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아동에게 중한 수준의 최종조치가 내려졌다. 신고년도, 지역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조치를 내리는 수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내려진 최종조치를 살핀 결과 행위자가 다수인지의 여부에 따라 중한 수준의 최종조치가 내려지거나 최종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은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취소의 조치를 받은 집단과 조치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들 집단을 분석해 본 결과, 학대판정 유형, 행위자 연령 및 성별, 지역,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 유무, 성학대 여부, 스크리닝 점수, 신고 및 판정된 아동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고소고발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의 조치를 받은 집단은 학대판정을 받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학대사례에서는 80%에 해당하는 반면, 조치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학대사례의 9.5%가 이에 해당하였다. 또한 고소고발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의 처벌은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행위자가 남자이거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해당 조치를 받은 집단에서는 연령의 평균이 약 41세, 조치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약 37세 정도로 나타나, 조치를 받은 행위자의 연령이 다소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서울, 경기도, 광역시를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해당 조치를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및 시설 종사자와 익명의 사람이 학대의심을 신고·접수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없는 집단에서는 부모의 학대의심 신고접수 사례가 74.7%로 나타나, 해당 조치집단의 45%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신 해당 조치 집단에서는 신고의무자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치 집단에서 신고·접수된 아동수와 각 판정 유형으로 판정받게 된 아동의 수가 더 많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전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단위: 개, %)

구 분		고소고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판정 유형	학대판정	32	80.0	32	9.5	125.966***
	잠재위험판정	2	5.0	39	11.6	
	일반판정	6	15.0	265	78.9	
아동 성별	남자	24	60.0	172	54.1	0.501
	여자	16	40.0	146	45.9	
행위자 성별	남자	7	16.7	20	6.1	6.070*
	여자	35	83.3	306	93.9	
신고년도	2010	3	7.5	34	10.1	0.277
	2011	10	25.0	81	24.1	
	2012	27	67.5	221	65.8	
지역	서울권	5	12.5	61	18.2	12.330**
	광역시권	12	30.0	83	24.7	
	경기도권	8	20.0	134	39.9	
	그 외 지역	15	37.5	58	17.3	
기관유형	민 간	18	45.0	190	56.9	2.993
	가 정	18	45.0	105	31.4	
	국공립 등	4	10.0	39	11.7	
신고자 유형	부모	18	45.0	251	74.7	22.310***
	타원생 부모 등	5	12.5	27	8.0	
	전직 보육교사	2	5.0	12	3.6	
	현직 보육교사	1	2.5	10	3.0	
	복지·시설 종사자 익명 등	10 4	25.0 10.0	22 14	6.5 4.2	
신고의무 유무	유	10	25.0	27	8.0	11.595**
	무	30	75.0	309	92.0	
신체학대	유	29	72.5	243	72.3	0.001
	무	11	27.5	93	27.7	

구분	고소고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서학대	유	16	40.0	94	28.0	2.497
	무	24	60.0	242	72.0	
방임	유	3	7.5	48	14.3	1.404
	무	37	92.5	288	85.7	
성학대	유	6	15.0	14	4.2	8.330**
	무	34	85.0	322	95.8	
중복학대	유	11	27.5	65	19.5	1.426
	무	29	72.5	269	80.5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29	72.5	270	80.6	3.058
	2개	9	22.5	60	17.9	
	3개	2	5.0	5	1.5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3.05	1.518	3.29	1.641	.921
행위자 연령	41.05	9.800	37.45	9.299	-2.325*
스크리닝 점수	3.03	2.032	1.24	1.332	-7.511***
신고 아동 수	8.70	16.701	1.15	8.407	-4.695***
판정 아동 수	5.15	9.950	1.40	6.305	-3.312**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4)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에서는 행위내용, 신체손상 여부, 도구사용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학대의 경우 행위내용,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빈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취소의 경우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거나 한 가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중복으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치를 받는 집단에게서 피해아동의 신체손상이 더욱 많이 나타났고, 도구 사용 역시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수가 2

명 이상인 빈도 역시 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행위자가 이사나 원장, 대표인 경우가 최종조치가 없는 집단보다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도 신체학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아동을 거부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서학대의 행위자가 이사나 원장, 대표인 경우가 최종조치가 없는 집단보다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많이 분포하였고, 정서학대의 여러 행위를 중복으로 경험하면서 해당 학대행위 빈도가 2회 이상인 경우가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50%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10.6% 정도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단위: 개, %)

구 분	고소고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흔들기/때리기	16	57.1	196	83.8	11.668**
	던지기/차기	6	21.4	21	9.0	
	중복	6	21.4	17	7.3	
신체 손상	유	17	58.6	93	38.3	4.454*
	무	12	41.4	150	61.7	
도구 사용	유	11	37.9	34	14.0	10.754**
	무	18	62.1	209	86.0	
행위자 수	단독	26	89.7	229	96.6	3.166†
	2명 이상	3	10.3	8	3.4	
행위자 성별	남자	2	6.9	6	2.7	1.432
	여자	27	93.1	214	97.3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12	42.9	57	23.8	4.832†
	보육교사	15	53.6	174	72.5	
	운전기사 등	1	3.6	9	3.8	

구 분		고소고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1회	18	66.7	140	58.6	0.658
	2회 이상	9	33.3	99	41.4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거부·착취·고립	4	25.0	59	64.1	9.028*
	공포감	3	18.8	11	12.0	
	중복	9	56.3	22	23.9	
행위자 수	행위자 1명	16	100.0	90	95.7	0.707
	행위자 다수	0	.0	4	4.3	
행위자 성별	남자	1	6.3	5	5.6	0.010
	여자	15	93.8	84	94.4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9	56.3	25	26.9	9.509**
	보육교사	5	31.3	65	69.9	
	신체손상 유무	2	12.5	3	3.2	
빈도	1회	2	12.5	39	41.5	16.346***
	2회 이상	6	37.5	35	47.9	
	2회↑*2가지↑ ¹⁶⁾	8	50.0	10	10.6	

*; p<.05, **; p<.01, ***; p<.001, †; p<.10

학대행위자에게 내려진 조치수준을 고소고발 및 자격 정지 또는 취소의 중한 조치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학대판정 유형과 행위자 성별, 지역,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 유무, 성학대 여부, 행위자 연령, 스크리닝 점수, 신고 및 판정 아동 수에 의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일수록 학대행위자에게 중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고 학대행위자가 남자일 경우, 서울이나 경기도, 광역시권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에서 학대행위자에게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가 복지나 시설 종사자일 경우나 발생한 학대유형이 성학대일 경우 역시 학대행위자에게 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정서학대는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하위 유형 중에서 학대 빈도가 각각 2회 이상인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고립시켰던 빈도가 2회 이상이면서 언어폭력을 2회 이상 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따라 학대행위자의 조치수준을 살펴보면, 아동을 던지거나 차거나 신체손상이 있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학대행위자에게 중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어린이집의 이사나 대표, 원장일 경우에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조치 수준도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도 행위의 중복과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조치의 수준이 엄격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정서학대를 빈번하게 한 행위자에게 더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최종조치 수준은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 정지 및 취소를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고, 이를 조치 없는 집단과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최종조치 수준은 지역, 기관유형, 행위자 연령, 스크리닝 점수, 신고 및 판정된 아동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판정을 받은 경우가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이 높았으며, 경기도권에서는 조치가 없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를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유형이 가정인 어린이집에서 고소고발 및 폐쇄, 원장의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최종조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스크리닝 점수, 신고접수된 아동 수와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된 아동의 수가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조치가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최종조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III-57>에 제시하였다.

<표 III-57> 전반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단위: 개, %)

구 분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판정 유형	학대판정	20	66.7	30	10.4	65.417***
	잠재위험판정	1	3.3	25	8.6	
	일반판정	9	30.0	235	81.0	

구분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 성별	남자	17	56.7	158	57.9	0.016
	여자	13	43.3	115	42.1	
행위자 성별	남자	1	3.3	19	6.8	0.592
	여자	29	96.7	262	93.2	
신고년도	2010	3	10.0	30	10.3	0.509
	2011	9	30.0	70	24.1	
	2012	18	60.0	190	65.5	
지역	서울권	1	3.3	51	17.6	8.407*
	광역시권	9	30.0	65	22.4	
	경기도권	10	33.3	124	42.8	
	그 외 지역	10	33.3	50	17.2	
기관유형	민 간	14	46.7	168	58.3	7.485*
	가 정	15	50.0	80	27.8	
	국공립 등	1	3.3	40	13.9	
신고자 유형	부모	19	63.3	213	73.4	-
	타원생 부모 등	1	3.3	26	9.0	
	전직 보육교사	2	6.7	9	3.1	
	현직 보육교사	-	-	11	3.8	
	복지·시설 종사자 익명 등	6	20.0	23	7.9	
신고의무 여부	유	5	16.7	28	9.7	1.445
	무	25	83.3	262	90.3	
신체학대	유	22	73.3	215	74.1	0.009
	무	8	26.7	75	25.9	
정서학대	유	10	33.3	78	26.9	0.565
	무	20	66.7	212	73.1	
방임	유	5	16.7	37	12.8	0.364
	무	25	83.3	253	87.2	
성학대	유	1	3.3	14	4.8	0.136
	무	29	96.7	276	95.2	

구 분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복학대	유	8	26.7	53	18.4	1.197
	무	22	73.3	235	81.6	
학대유형 중복 수	1개	22	73.3	236	81.7	-
	2개	8	26.7	46	15.9	
	3개	-	-	7	2.4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동 연령	3.13	1.697	3.17	1.573	0.121
행위자 연령	41.14	8.072	36.70	9.098	-2.723*
스크리닝 점수	2.53	1.889	1.27	1.419	-4.484***
신고 아동 수	4.60	6.996	1.78	8.899	-2.047*
판정 아동 수	4.33	7.078	1.27	7.005	-2.279*

*; p<.05, **; p<.01, ***; p<.001, †; p<.10

(6) 학대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

학대유형에 따른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신체학대에서는 신체손상 여부, 도구사용 여부, 빈도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행위내용과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이 고소고발이거나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로 높은 집단이 최종조치가 없는 집단에 비해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사용 역시 조치 없는 집단이 16.3%인데 반해,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36.4%로 나타나 조치가 없는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역시 조치가 없는 집단에 비해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학대의 빈도가 2회 이상

인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 거부(경멸), 착취, 고립, 공포감의 행위를 당하는 사례보다 이들 행위를 중복으로 당하는 사례가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70%를 차지하는 반면, 조치가 없는 집단에서는 26%로 나타나, 정서학대의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 이들 행위내용의 중복에 따라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빈도 역시 정서행위의 중복을 경험하면서 2회 이상인 비율이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학대의 행위자가 이사, 원장 또는 대표인 경우도 최종조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학대유형에 따른 어린이집의 최종조치 수준 집단 비교

(단위: 개, %)

구 분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체학대						
구체적 행위	흔들기/때리기	14	66.7	173	83.6	3.784
	던지기/차기	4	19.0	21	10.1	
	중복	3	14.3	13	6.3	
신체 손상	유	14	63.6	83	38.6	5.172*
	무	8	36.4	132	61.4	
도구 사용	유	8	36.4	35	16.3	5.421*
	무	14	63.6	180	83.7	
행위자 수	단독	22	100.0	204	97.1	-
	2명 이상	-	-	6	2.9	
행위자 성별	남자	1	4.5	6	3.1	0.137
	여자	21	95.5	189	96.9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8	38.1	46	21.8	4.525
	보육교사	11	52.4	156	73.9	
	운전기사 등	2	9.5	9	4.3	
빈도	1회	14	63.6	180	83.7	5.421*
	2회 이상	8	36.4	35	16.3	

구 분		고소고발,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		조치 없음		χ^2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거부·착취·고립	1	10.0	49	63.6	10.669**
	공포감	2	20.0	8	10.4	
	중복	7	70.0	20	26.0	
행위자 수	단독	10	100.0	75	96.2	-
	2명 이상	-	-	3	3.8	
행위자 성별	남자	1	10.0	4	5.5	0.317
	여자	9	90.0	69	94.5	
행위자 관계	이사·대표·원장	5	50.0	18	23.4	17.746***
	보육교사	2	20.0	57	74.0	
	기타	3	30.0	2	2.6	
빈도	1회	2	20.0	32	41.0	20.552***
	2회 이상	1	10.0	37	47.4	
	2회 ↑ *2가지 ↑ ¹⁷⁾	7	70.0	9	11.5	

*: p<.05, **: p<.01, ***: p<.001, †: p<.10

어린이집에 내려진 조치수준을 어린이집의 고소고발 및 폐쇄, 원장의 자격 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중한 조치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학대판정 유형, 지역, 기관유형 등에 따라 조치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 엄격한 조치들이 내려졌고, 서울이나 광역시, 경기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기관유형이 가정인 기관에서 고소고발 및 폐쇄, 원장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조치 수준은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동에게 손상을 입힌 경우, 신체를 해했던 빈도가 높았던 경우 엄격한 조치가 내려졌다. 다양한 정서학대 행위가 중복으로 발생하거나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의 이사나 대표, 원장일 경우에 다소 어린이집에 다소 엄격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정서학대 역

17) 정서학대는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하위 유형 중에서 학대 빈도가 각각 2회 이상인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고립시켰던 빈도가 2회 이상이면서 언어폭력을 2회 이상 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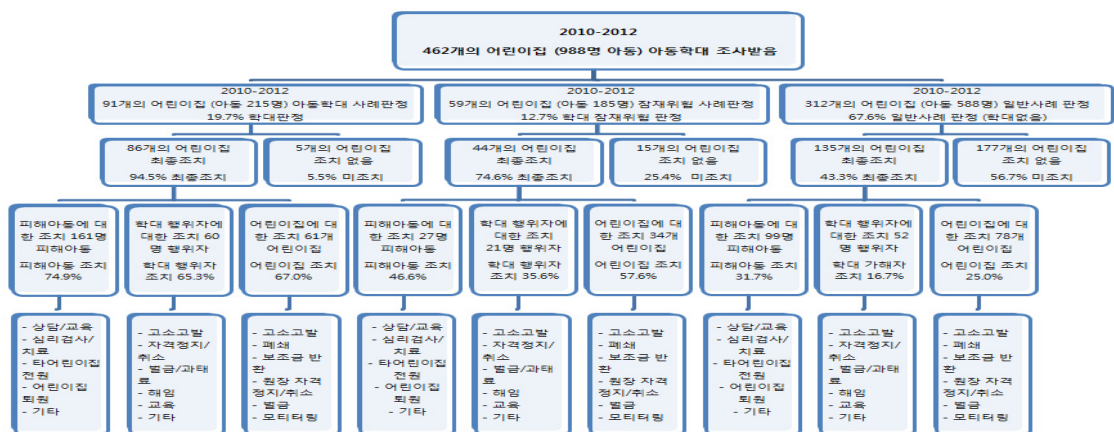
시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더 자주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해 어린이집에 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판정을 받은 91개 어린이집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신고접수에서부터 최종조치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한 흐름은 다음의 <그림 III-1>에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462개의 어린이집으로부터 988명의 아동에 대해 학대의심 신고접수가 이루어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 사례에 대한 조사 진행 후 학대사례 및,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총 462개의 어린이집들 중 91개 어린이집으로부터 215명의 아동이 학대판정(19.7%)을 받았으며, 59개의 어린이집으로부터 185명의 아동이 잠재위험사례로 판정(12.7%)을 받았고, 312개의 어린이집으로부터 588명의 아동이 일반사례로 판정(67.6%)을 받았다.

학대판정을 받은 91개의 어린이집 중 86개(94.5%)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74.9%),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65.3%),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67%)가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에게는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를 비롯한 어린이집 전·퇴원의 조치를 내렸고 학대행위자에게는 고소고발 및 자격 정지·취소, 해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학대판정 어린이집 중 61개 어린이집에는 운영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나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림 III-1>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조치 및 미조치 결과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과요약
2. 시사점
3. 제언



1. 결과요약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를 어린이집 단위별로 분석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로 판정한 유형을 포함하여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는 2010년도에 44개, 2011년도에 119개, 2012년도에 299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학대의심 어린이집 수는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44개에서 299개로 큰 폭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반사례의 폭증이 두드러졌다. 연도별 학대판정비율은 29.5%, 24.4%, 16.4%로 나타났고, 이 기간 동안 학대판정율은 평균 19.7%였다. 최근 3년간 13개, 29개, 49개의 어린이집에서 학대판정이 내려져 총 91개의 어린이집이 학대를 판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판정을 받은 이 91개의 어린이집 중 31개(34.1%) 어린이집이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에 학대판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은 학대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18개(19.8%) 분포하여 경기도에 이어 학대판정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었다. 보육통계 자료(2012)에 의하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분포하고 그 다음이 서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은 어린이집의 분포수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학대를 판정받은 91개 어린이집에서 총 215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남아가 119명(55.3%), 여아가 96명(44.7%)이었다. 이 아동들의 평균나이는 3.22세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에 비해 학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91개 어린이집 중 4개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자가 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95명의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87.4%인 83명이 여성이었고 12명(12.6%)이 남성이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분포하였으며, 95명의 학대행위자 중 41세-45세인 행위자가 19명(20%)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2명의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93명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39.57세로 나타났다.

또한 95명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중 학대행위자가 원장이거나 보육교직원인 경우가 전체의 88.3%를 차지해, 어린이집의 주 학대행위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특성

학대를 판정받은 91개 어린이집의 유형은 국공립이 5개, 민간이 53개, 가정이 31개, 기타 사회복지법인 기관 2개로 나타나, 민간이나 가정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판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의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를 한 신고자는 부모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9.9%, 현직 보육교직원과 전직 보육교직원이 각각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개 학대판정사례 중 단일학대는 72개(79.1%), 중복학대는 19개(20.9%) 어린이집에

91개 학대판정사례 중 단일학대는 72개(79.1%), 중복학대는 19개(20.9%)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 단일학대는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순으로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가 52.6%, 신체학대와 방임이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가 21.1%를 차지했으며,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동시 발생도 3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손바닥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고 무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신체학대 발생 중 28.4%를 차지하였다. 몽둥이나 파리채와 같이 막대기 형태의 도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67.2%가 상처나 멍 등의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학대 발생의 73.6%가 신체학대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91개의 어린이 집 중 6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생식기나 가슴, 그 외의 몸을 만지는 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 아동 학대를 판정받은 어린이집에서 신체학대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학대유형으로, 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전체의 33.3%,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31.6%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교사가 아동을 홀로 두는 감독방임의 형태가 전체의 35.1%로 가장 많이 발생한 방임유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판정된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는 전반적으로 1회 발생한 경우가 많았지만, 장기간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각 학대유형별 10% 내외로 나타났다.

6) 어린이집 아동학대 최종조치의 특성

학대판정을 받은 91개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취했던 최종조치를 분석한 결과, 5개 어린이집을 제외한 86개의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나 학대행위자, 어린이 집 자체에 대한 조치를 취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215명에 대한 최종조치는 총 161명(74.9%)에게 내려졌으며, 이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어린이집 퇴원이 41.9%, 타 어린이집으로의 전원이 28.4%,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가 각각 13.9%, 3.3%, 5.6%로 나타났다. 이 215명의 아동들 중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을 어린이집 단위별로 선별하여 이들 91명의 아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가 각각 14.7%, 2.9%, 7.9%로 나타나 학대수준이 높은 아동에게 보다 적극적인

최종조치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었다.

95명의 학대행위자 중 65.3%에 해당하는 62명에게 최종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들 중 고소고발이 39.8%로 나타나 가장 많이 내려진 조치결과였으며, 그 다음으로 해임(26.9%), 벌금(11.5%)의 순이었다.

91개 어린이집 중 61개(67%)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 최종조치가 내려졌는데, 보조금이 중지되거나 반환된 경우가 2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니터링이 26.7%, 폐쇄가 11.6%, 고소고발이 10.5%로 나타났다.

7)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별, 조치별 비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판정별, 조치별 비교한 결과,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학대사례와 같이 명확하게 학대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우나 정황상 학대의심 상황이 추측되거나 업무상 과실로 판단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잠재위험사례로, 구체적인 학대상황에 대한 증거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일반사례로 판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중복학대 유무 및 학대유형의 중복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 두 판정유형 간 스크리닝 점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의 경우 도구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에 따라, 정서학대의 경우 구체적인 학대 행위 및 빈도에 따라 학대판정 유형과 잠재위험판정 유형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성학대의 경우 충분한 사례 수가 확보되지 않아 이 두 유형 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비교한 결과, 행위자 성별, 신고자 유형, 행위자 연령 및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두 판정 유형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의 경우 두 판정 유형간 구체적인 행위, 신체손상 유무, 도구 사용 유무, 행위자 성별 및 관계, 행위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행위자 관계, 행위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의 특징이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학대사례와 일반사례의 경우 신고의무 및 중복학대 유무 등에 따라 두 판정 유형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정유형별 최종조치를 분석한 결과,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를 판정받은 어린이집에서 94.5%가 최종조치의 처분을 받은 반면, 잠재위험사례의 경우 74.6%, 일반사례의 경우

43.3%가 최종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유형별 비교를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최종조치가 취해진 집단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피해아동의 경우 상담 및 치료연계 등의 조치를 받은 집단과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집단은 학대판정 유형, 행위자 성별, 신고년도, 지역 등에 의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역시 학대판정 유형, 행위자 성별, 지역신고자 유형, 신고 유무, 성학대 유무에 따라 차이가 고소고발이나 자격 정지 및 취소의 강력 조치 집단과 조치를 받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고소고발이나 폐쇄, 원장의 자격 정지 등의 최종조치가 내려진 집단과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집단 간 학대판정 유형, 지역, 행위자 연령, 스크리닝 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조치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역 간 최종조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시사점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의 증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91개 어린이집에서 215명 아동이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42,52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전체 수에 비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얻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 공보육 시스템에서 단 한 건의 아동학대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91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율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과 더불어 전국 어린이집의 확률 표본을 통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정확히 추정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수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3개 어린이집으로 시작해 2011년 29개, 2012년 49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이집 아동학대의 증가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간 증가는 실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증가일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학대의 발견과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대로 신고 되었으나 조사결과 학대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된 일반사례에서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학대사례는 지난 3년간 270%의 증가를 보였지만 일반사례는 3배 가까운 681%의 증가를 보였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율 대비 판정율 감소

연구 분석결과 아동학대 판정율은 3년간 평균 19.7%였다. 19.7%의 판정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발표한 신고율인 2010년도 71.3%, 2011년 72.8%, 2012년 76.4%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이며 한국보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훨씬 높은 미국의 2012년 아동보호기관의 학대 판정율 18.5%와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율의 시간적 추이를 보면 2010년 28.9%, 2011년 24.6%, 2012년 16.4%로 판정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고율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한국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 증가는 환영할 만하지만, 반면에 신고율 증가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내 자원배분의 문제,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와 함께 그 의미와 대응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높은 신체학대 비율

학대 특성으로 볼 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높은 신체학대 비율이다.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 지난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유형별 특성을 보면 신체학대 55%, 정서학대 14%, 성학대 7%, 방임 3%, 중복학대 21%로 나타났다. 유형별 특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은 신체학대 비율이다. 단독유형으로서 신체학대를 55%와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와 관련된 학대를 감안하면 전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중 73.6%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신체학대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간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신체 학대율 28.8%나 유사한

데이터시스템의 미국 아동보호기관 (Child Protective Services)의 17.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정서학대에서도 다양한 하위유형 중 공포감 조성 및 다른 폭력에 대한 노출이 전체 정서학대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어 어린이집 내 체벌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 근절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4)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유형에 따른 학대행위 차이

아동보호기관에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은 사례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와 잠재위험사례로 판정을 받은 사례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판정유형사례와 관련된 전반적 특성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대 유형별로 구체적 학대 행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에서 더 심각한 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들이나 한 가지 이상의 행위들이 중복되어 행해졌을 때, 그리고 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학대의 경우 신체손상 유무나 도구 사용 유무도 학대사례 판정과 연관이 있었는데, 신체손상이 있거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학대사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했으나 학대관련 증거 없음 판정을 받은 일반사례 간에 비교를 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학대의 전반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남자인 경우, 신고년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인 경우, 신고 아동 수가 많은 경우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 행위에서도 학대사례와 잠재위험 사례의 차이에서 보여준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나 그 차이는 훨씬 더 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판정을 내리는 데에는 학대 특성의 심각성이 중요하게 관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반면에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 간에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행위와 학대사례의 전반적 특성에 관해 연구하여 증거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 판정을 내리는 증거의 세부사항들(증거의 종류, 결정적 증거의 특성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는 향후 심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5)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치 대상에 따른 최종조치 차이

최종조치는 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지거나, 이들 중 하나 이상의 대상에 대해 중복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최종조치에 따른 차이를 분석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조치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에서는 연구변수에 따른 차이를 많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학대판정 외에는 피해 아동의 상담 및 치료연계 여부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학대 행위자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최종조치에서는 다양한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아동학대 특성의 심각성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의 학대행위나 감독책임 소홀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대 판정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최종조치를 내리는 현황과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에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않아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 또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제언

본 연구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분석을 통해 지난 3년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를 분석하였다. 검증된 아동학대사례 기록 추출 코딩 시스템을 이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로 판정한 91개 어린이집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 세부 특성들을 계량화하였다.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었으나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량화하여 학대사례와 비교하고, 학대판정 및 최종조치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분석 결과 학대유형 중 신체학대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신체적인 체벌이나 훈육 대신에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직군별 양성과정, 자격취득시험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도·양육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신고의무자 교육보다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습득이 가능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 교육의 필수적 이수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양성 및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외부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이 적절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역시 중요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여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인력충원, 규정 근무시간 보장, 업무량 조절,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도·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아동학대 발생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자가 점검 및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 실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의 증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홍보가 수반된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환경에서 아동학대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해주는 것 역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 권리의 심각한 침해이자 아동 건강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한국 0-5세 아동 대상 공보육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단 한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어린이집과 관련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의 발생지 및 행위자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이는 아동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종사자들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일 것이다. 열악한 처우에서 희생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조사기관으로서 그리고 어린이집은 피조사기관으로서의 관계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아동학대 문제를 놓고 볼 때 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처럼 중요한 파트너십도 드물다.

무엇보다 먼저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개입이 종결된 후 아동을 지역사회에 원활히 복귀시키는 데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가진다. 지역사회 내 기관들 간 파트너십이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타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기관 간 신뢰가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지난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학대로 판정받은 91개 어린이집과 잠재위험이나 일반 사례로 판정받은 371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작업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적 기반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이 아동학대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경·김혜영·최현미(2013). 아동복지론(3판), 경기도 파주: 양서원.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장화정·윤은영·박은혜(2013). 영아대상 방임의 실태 및 발생요인의 관한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1(3), 93-113.
- 차영숙·문혜련(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8, 61-80.
- Barnett, D. Manly, J. T., & Cicchetti, D. (1993). Defining child maltreatment: The interface between policy and research. *Child abuse,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8, 7-73.
- Finkelhor, D., Williams, L. M., Burns, N., & Kalinowski, M. (1988). *Sexual abuse in day care*. US: Sage Publications.
- Knutson, J. F., DeGarmo, D., Koepl, G., & Reid, J. B. (2005). Care neglect, supervisory neglect, and harsh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ggress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hild maltreatment*, 10(2), 92-107.
- Mennen, F., Kim, K., Sang, J., & Trickett, P. K. (2010). Child neglect in multiply-maltreated urban adolescents: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s experiences. *Child Abuse and Neglect*, 34, 647-658.
- Schumacher, R. B. & Carlson, R. S. (1999). Variable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abuse in daycare settings. *Child Abuse and Neglect*, 23(9), 891-898.
- Trickett, P. K., Mennen, F., Kim, K., & Sang, J. (2009). Emotional abuse in a sample of multiply-maltreated, urban adolescents: Issues of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Child Abuse and Neglect*, 33(1), 27-35.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I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 인 쇄 일 :** 2013년 12월
- | 발 행 일 :** 2013년 12월
- | 발 행 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 발 행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 |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Ⅰ.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